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 새로운 서비스산업 · 농림어업 중심 -

2016. 2. 1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 1

Ⅱ. 추진 방향 ····· 3

Ⅲ. 중점 추진과제 ····· 5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5

2.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 13

(1) 스포츠 산업 ····· 13

(2) 공유경제 ····· 24

(3) 헬스케어 산업 ····· 32

(4) 대학 해외진출 ····· 37

3.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40

4. 새만금 활성화 방안 ····· 66

Ⅳ. 세부 추진계획 ····· 71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 최근 수출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고용 창출능력이 둔화**

취업자 및 GDP 증가율(%, 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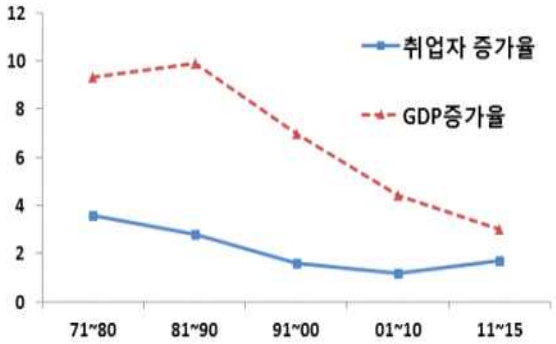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 증가율(%,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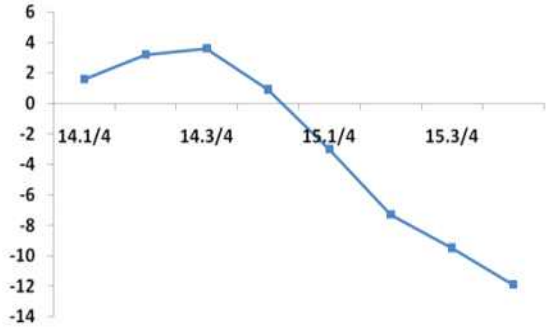

* 출처: 산업부

□ 그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민간소비 개선** 등 경제활성화 성과를 거두었으나,

* (재정) 추경 등 재정보강(22조원), '16.1/4분기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21조원+α) 등
(소비)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 **가계소비와 재정여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여력 확충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 필요**

민간소비 증가율(%, 전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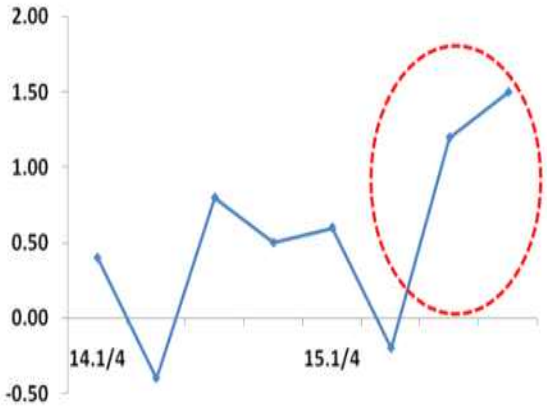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부문별 성장 기여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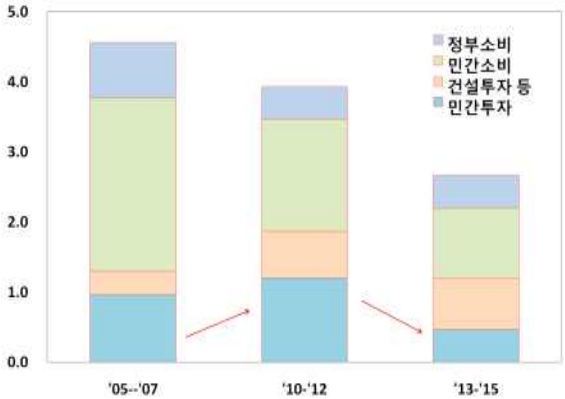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의 투자 기회 지속 감소**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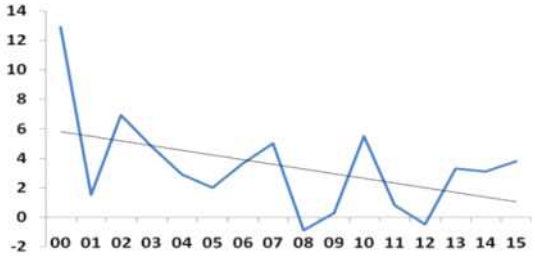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해외투자 규모(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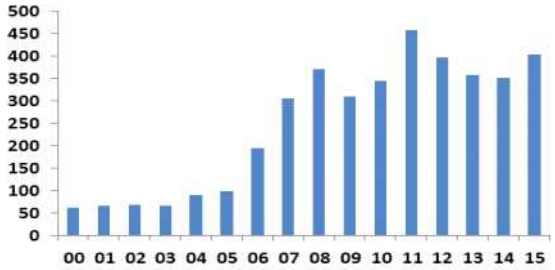

* 출처: 기획재정부

□ 따라서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신산업·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 **규제 또는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 존재

○ 국민소득 증가·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한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등 **서비스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부족**

○ 한-중 FTA, 귀농·귀촌인구 증가추세 등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 발생**

○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15.10월) 등으로 새만금 지역을 **對중국 진출 교두보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새로운 시장

구분	시장동향 및 전망
스포츠 (국내시장)	('13년)41→('17e)50조원 * 관광산업(23조원)의 1.8배
바이오 (세계시장)	('13년)330→('20년e)635조원 * 연평균 9.8% 성장
공유경제 (세계시장)	('13년)51→('25년e)3,350억불

농림어업 수출 및 귀농귀촌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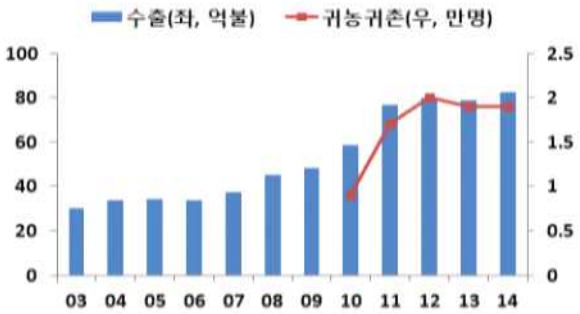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 **경제활력 제고** 및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 앞으로도 **신산업·서비스업 투자기회 발굴**을 지속 추진

Ⅱ. 추진 방향

◇ ① 즉시 투자창출이 가능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② 소득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생겨나는 **新서비스시장 육성**
③ 한-중FTA를 계기로 투자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④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새만금 투자 촉진**

⇒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해결(6건, 6.2조원 규모)

2 新기술, 新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분야 개척**

① **(스포츠산업)** 규제개선 등을 통한 **스포츠 시설 확충, 골프·캠핑** 등 유망분야 활성화, **스포츠용품 강소기업 육성**

② **(공유경제) 새로운 형태의 공유서비스**(숙박·차량·금융 등) **출현에 대응**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③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시장형성 촉진**을 위한 **그레이존 해소, 세제혜택·자금조달 여건 개선**

④ **(대학 해외진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를 활성화**하고, 국내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 허용**

3 한-중 FTA를 계기로 투자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규제개선·시장형성을 통하여 농림수산분야 **민간투자 유입**

○ 융복합·수출 촉진 등 **6차 산업화**, 유기농 등 **프리미엄 상품 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4 **새만금**에 획기적 인센티브·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투자여건 개선**

목표 6.2조원+α의 투자효과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

투자와 일자리 기회가 많은 새로운 분야 육성에 집중

(4대 분야, 123개 과제)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 (6개 과제)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43개 과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64개 과제)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10개 과제)
추진 과제	①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② K-컬쳐밸리 조성 지원 ③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지원 ④ 의왕산업단지 조성 지원 ⑤ 태안 기업도시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 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스포츠 산업> ① 시설 확충 ② 산업 육성 ③ 저변 확대 <공유경제> ① 숙박공유 ② 차량공유 <헬스케어> ①건강관리서비스 ②첨단바이오제품 개발 ③코스닥 상장기준 개선 <대학 해외진출>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② 해외캠퍼스 설치 허용	① 민간투자 촉진 -농업특화단지 -외해양식단지 -산지의 활용 -농수산 벤처 ② 6차 산업화 -생산,가공,판매결합 -농어촌 관광 -전통주 경쟁력 강화 ③ 유기농·고품질 농수산품 수출상품화 -유기농산물 활성화 -원산지 표시강화 ④ 귀농·귀촌 촉진 -귀농·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 -어업 진입장벽 완화	① 국내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 ② 개발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③ 규제청정 시범지역화 - 입지규제 완화 - 규제개선 프로세스 개선 ④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인허가 절차 One-stop처리 - 행정구역 조기 확정 -새만금청의 산단 관리 역할 강화

Ⅲ. 중점 추진과제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6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1)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 **(현황) 양재·우면 일대**는 다수의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등 **투자여건이 우수***하나, **R&D 기능 활성화에는 한계**

* 300여개의 대·중소기업 R&D시설 소재, 우수인력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확장성, 광역교통 인프라 등

○ **민간 연구소 등의 자생적 밀집**이 이루어져 있으나, 주변 여건 및 잠재력을 활용한 **R&D 산업생태계 육성 노력은 미흡**

○ **입지 특성에 따른 개발규모 제약*** 등으로 **기업 R&D시설**의 신축적인 **신·증설 투자에 애로**

* 해당지역은 주로 자연녹지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50~200%)

[사례] 우면동 소재 기업 A,B의 경우 9,000억원 이상의 R&D관련 증설 계획

- 양재IC 인근 **R&D공간 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존재하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 **개발·활용 수준 미약***

* 해당 부지내 용적률은 최대 400%이나, 유통·물류 관련 시설 등으로 도입 분야 한정(현재 상당수 시설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건축)

⇨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 R&D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책적 관점**의 접근 필요

□ **(개선방안) 정부·지자체간 협업**(공동 T/F 구성*)을 통해 해당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

* 기재부·미래부·중기청, 서울시·서초구, 관련 연구기관 등

○ **T/F 논의 및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역특구로 지정**('16.10월, 중기청)

* 해당지역 일대 개발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서울연 등, ~'16.4월)

<양재 · 우면 일대 현황>

- **(대상지역) 양재·우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여건 및 도시계획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예시) 양재IC 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매헌역 일대 중소기업 R&D시설 밀집지역 등

- **(규제특례)** R&D 관련 기업 등의 **투자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 (예시) 특구 지정을 통한 R&D 관련 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R&D 특허 우선심사, 외국전문인력 비자 간소화 등 검토

- **(지원방안) 우면동 일대 공공부지**를 활용한 **R&D 기업지원 시설* 건립** 등 지원방안 마련

* (예시) 창업보육공간, 기업 임대공간, 회의실, 컨설팅 공간 등 R&D 지원시설

○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규제특례, 각종 인·허가 절차 등)를 **fast-track으로 지원**하여 **'17년부터 단계적 조성** 추진

□ **(기대효과) 3조원의 R&D 관련 투자 창출이 예상**되며, 인근 판교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육성

(2) K-컬처밸리 조성 지원

□ (현황) B기업이 고양시 일대에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K-컬처밸리** 조성을 추진중('15.2월 발표)이나 **사업부지 내 공유지의 대부 가능기간 등이 불확실**하여 투자에 애로

○ 공유재산법상 **제조업체**의 공장 등은 **대부기간이 20년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서비스업**은 **대부기간이 5년이고 수의계약 불가**

* 공유지 대부기간(공유재산법 시행령): 5년(1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예외: 20년(벤처기업, 지방이전기업, 제조업체의 공장 등), 50년(외투기업)

< K-컬처밸리 사업부지 현황 >

► **총 91,594평**

·(T1~T2) 테마파크 / 71,814평

·(C1~C6) 상업시설 / 12,622평

·(A6) 호텔·공연장 / 7,000평

► **공유지**(경기도 소유): T1~T2 구역 71,814평(전체 부지의 78.5%)

□ (개선방안)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도 공유지를 활용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 **공유지 20년 대부 및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 추가**(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16.2/4, 행자부)

□ (기대효과) **1.4조원**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핵심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지원

□ (현황) 고양시가 튜닝·정비·매매 등 **자동차 관련시설**과 **상업·문화시설**이 집적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

* 튜닝산업진흥대책('14.6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 마련('16.1월)

※ 외국의 경우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동차서비스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도심지와 인접**하고 **교통이 우수**한 반면 **보전가치는 낮은 관내 개발제한구역***(GB)**을 활용**할 계획이나, 서비스 단지로 활용 가능성 **불투명**

* 대상부지는 도로에 둘러싸여 단절된 나대지 등으로서 도시확산 방지, 난개발 방지 등 GB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상황

- 산단, 주택단지 등 이외에 **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GB 활용사례가 없어** 사업 추진 가능성 불투명

* GB 해제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상업시설 비중을 제한(산단 등의 경우 7% 수준)
→ 상업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전용단지 특성상 동 기준 충족 곤란

- GB내 **농업적성도 1등급지, 농업진흥구역**(1등급지의 74%)도 **포함**

□ (개선방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튜닝산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내 최초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지원**

【단지 조감도】

【개념도】

○ GB 해제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 해소**(GB 해제지침 개정, '16.4월, 국토부)

- 자동차서비스업 전용단지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상업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연구개발 및 교육시설 확대** 등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사업계획 보완**('16.2/4, 국토부 · 지자체)

○ GB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16.4/4)하고, **'17년중 착공** 추진

- GB 해제 협의시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도 **일괄 검토**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16.6월, 농식품부)

□ **(기대효과)** 단지 조성에 따른 **8,000억원 투자 발생, 튜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업과 제조업 차별 해소**

(4) 의왕산업단지 조성 지원

□ **(현황)** 의왕시 내 **기존 공업지역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이전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15.12월)

○ 대체산단부지와 관련한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 중도위에서 산단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획간 상충 문제를 이유로 '보완후 재심의' 결정('15.2월)

- **산단 예정부지***를 향후 **의왕ICD 확장****을 위한 대상부지로 검토** 중이므로 위치 변경 필요(국토부)

*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1-2터미널 사이에 위치

** '14년 기준 의왕ICD 시설 이용률은 72%로, 컨테이너 장비 등 고려 시 사실상 포화상태에 해당하여 입주기업, 화물연대 등에서 시설확장 요구 중

- **타 지역에 산단 조성시** 적정부지 선정, 사업계획 재수립 등을 위한 기간소요로 **적기에 공장이전수요 충족*** **곤란**(의왕시)

* '고천행복타운' 내 기존 공업지역(89천㎡) 해제(공업지역→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시기('16.8월 예정)에 맞춰 대체 공업지역(산단) 지정 필요

□ **(개선방안) 계획을 변경·보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향후 의왕 ICD시설 확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단지 **예정부지 중 일부**를 **의왕ICD 1·2터미널 연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하고 산단 조성 추진

* 산단부지 동북부 일부구역을 제외하는 조정안 마련 → 중도위 통과('15.12월)

- **산업단지 지정**('16.8월) → **착공**('16.10월) → **산단 준공**('18년)

○ 향후 인근지역에 **의왕ICD**시설 **확장시 지자체**가 **적극 협조**

【당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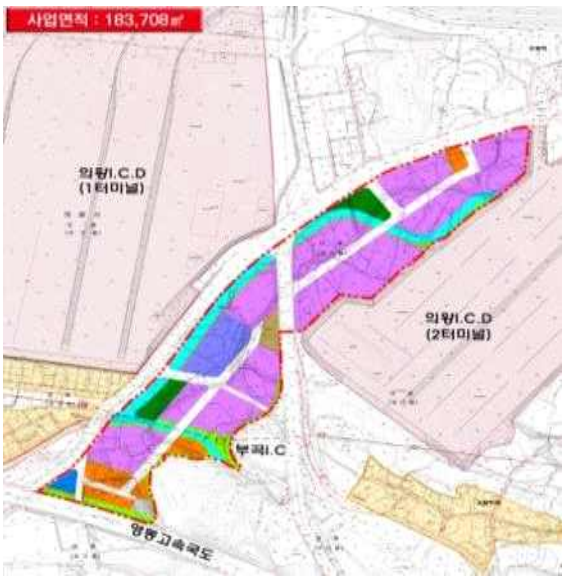

【변 경】

□ **(기대효과)** 공장이전에 따른 **6,000억원 신규투자 발생, 행복주택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기존 ICD의 확장성 보장**

(5) 태안 기업도시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

□ **(현황)** A기업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도시내 **타이어 주행시험 센터*** 투자를 계획중

* 고속주행 시험로, R&D센터 및 관광객 전용 드라이빙 센터 등 152만m^2

○ 기존 계획상 **골프장 예정부지 일부** 등을 활용하고자 하나, **기업도시 지정 당시**('05.8월) **부과된 조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

* 식량위기 등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 상당부분을 농지로 환원 (→ 타이어 주행시험 센터 설치시 농지 환원 불가)

○ 기업도시내 골프장 예정부지 외 **기업도시 밖 추가 부지**(농지 등) 확보도 필요한 상황

<주행시험 R&D 센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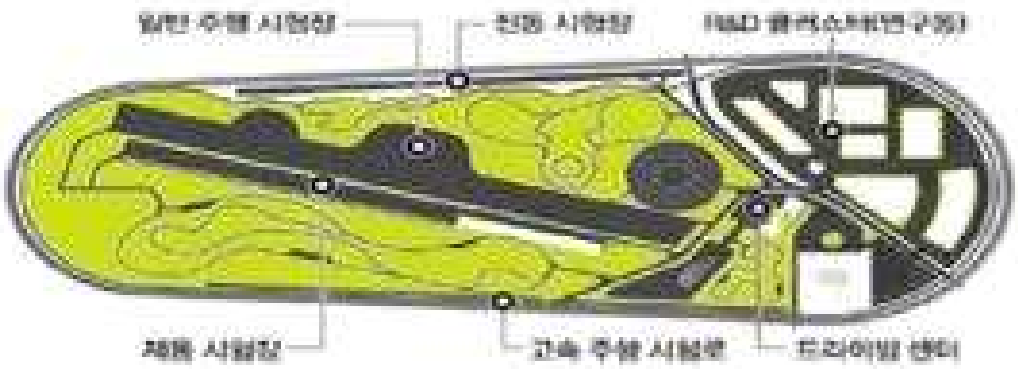

□ **(개선방안)** **시설 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업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16.12월, 문체·국토부)

○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업도시 지정 당시 설정된 **농지 환원면적 조건 완화**

○ 기업도시 밖 농지를 추가로 편입하고, **기업도시내 미개발 구역 등을 해제**하여 **농지로 환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대효과)** '17년부터 **3천억원 투자**를 통해 첨단연구시설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미래형 융복합 기업도시로** 육성

(6)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 (현황)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활용하여 **13개 지구**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또는 발전소 건설 추진중**

* 냉각효과 등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높고, 수면에 설치함에 따라 산림·농지훼손 방지 가능

< 저수지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 >

구 분		개소수 (지구)	발전규모(시간당) (㎾)	예상발전량(연간) (㎿h)
기 운영	농어촌공사	6	1,940	2,558
	민간	6	9,425	12,872
사업준비중	농어촌공사	1	500	644
합 계		13	62,805	83,009

○ 특히, 저수지 **수면 사용료 감면**(매출액의 10%→5%)('15.12월), 넓은 **유휴 수면 면적** 등을 감안, **민간**에서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큰 관심

○ 그러나 관련법령상 **농업진흥구역내 저수지 수면**의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 **소수력**(저수지 등의 높이차를 이용한 소규모 수력)·**풍력발전**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

- **저수지 인근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부대시설**(예: 송전용 전기실) **설치가 불가능 → 사업보류** 또는 원거리 설치 등으로 **사업비용 증가**

□ (개선방안) 농지법 **시행령**에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의 **허용 근거 규정**을 마련('16.10월, 농식품부)

□ (기대효과) **약 1,400억원의 신규투자*** 창출이 기대되며, 농업용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술발전을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기반 확충

* 농업진흥구역내 위치한 저수지 중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9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정

2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1) 스포츠산업 활성화

◇ **스포츠 산업***은 건강·여가 활동 관심 증가로 관광산업(23조원)의 1.8배에 달하는 **큰 시장**(41조원, '14년/스포츠산업 실태조사)**으로 성장**

* **시설업**(골프장, 스키장, 경기장 운영업 등), **용품업**(용품, 의류 등 제조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프로스포츠, 마케팅업, 미디어업 등)으로 구성

** 스포츠시장 규모(단위: 조원): ('08) 26 → ('10) 34 → ('12) 38 → ('14) 41

○ 향후에도 **소득수준 상승, 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스포츠시장의 빠른 확대**가 예상

◇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최근 **중국***도 스포츠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 중**

* 스포츠 커뮤니티 활성화, 혁신적 제품 R&D지원 강화 등(EC, '14년)

** 스포츠 경기업(경륜, 자동차 경주 등), 교육업을 집중 육성('14년)

*** '25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프로화 등을 통해 스포츠 산업을 5조위안 규모로 성장(스포츠 산업 발전과 소비 촉진계획, '14.10월)

⇒ 우리도 **스포츠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 부족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용품업·서비스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 추진**

○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및 스포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하천부지 활용** 등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 골프장·캠핑장 등 **스포츠 시설업** 및 **스포츠 용품 강소기업 육성**, 한-중-일 **프로스포츠 교류** 등 **스포츠 서비스업 활성화**

○ 학교체육·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한 **스포츠 저변 확대**

⇨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 확대**('14년: 41.3조원 → '17년: 50조원 목표) 및 **일자리** 창출('14년: 27 → '17년: 32만개 목표)

1-1) 스포츠시설 확충

①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 **(현황)**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GB)**을 활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엄격한 설립요건 등**으로 인해 **추진에 애로**

* 전국 GB내 지자체 체육시설은 246개('15.8월)

○ **(실내체육관, 15개) 규모 제한**(연면적 800㎡ 이내)으로 인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체육관 건립에 한계**

* 한면 설치면적: 족구장 980㎡, 테니스장 809㎡, 게이트볼장 594㎡

※ [사례] A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등을 갖춘 복합실내체육관을 설립하고자 하나, 면적제한으로 설립에 애로

○ **(실외체육시설, 231개) 부대시설**(200㎡ 이내) **용도가 제한적***이며, **X**(익스트림) **스포츠 등 새로운 스포츠 시설의 설치 여부가 불분명****

* (현행)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로 제한

** (현행) 배구장, 테니스장, 잔디축구장·야구장 등 및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만 가능**

□ **(개선방안)** 지자체의 **GB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입지규제 개선

○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건축 연면적 기준 확대**(800㎡→1,500㎡)(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16.2/4, 국토부)

* 다만 연면적 1,200㎡ 이상 1,500㎡ 이하 체육관은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설립 가능

○ **(실외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용도 확대(샤워실 · 조명탑 · 사무실 등 편의시설)(유권해석, '16.1/4, 국토부)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X**(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도 입지 허용**

②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현황) 제조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과 달리 체육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혜택 제한

*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5년 이내)할 경우 투자금액 3% 범위내에서 근로자 1명당 1,000~2,000만원 이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 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

* 숙박 또는 음식점 및 편의시설과 함께 체육시설, 식물원 등을 갖춘 휴양지

- 6만여개의 체육시설 중 전문휴양업 등록시설은 19개('14.5월)

□ (개선방안) 수영장 등 체육시설(9개 종목*)이 전문휴양업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등 여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16.4/4, 기재부)

*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③ 국가하천 내 체육시설 확충

□ (현황)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 지구를 친수지구로 전환하는데 애로

* 하천구역은 하천법상 보전・복원・친수지구로 구분(지정권자: 국가하천은 국토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

○ 지구지정·변경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구 변경 가능성 판단 곤란

※ [사례] B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금강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변경에 애로

○ 또한, 국가소유 폐하천 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가능성 불분명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설치가능→체육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사례] C시는 폐하천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설치가능 시설인지가 불명확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지연

□ (개선방안) 보전 필요성이 낮은 하천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

○ 하천 지구지정 기준 및 지구별 관리기준을 마련(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15.12월 旣개정, 국토부)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해 지구변경 추진**('16.2/4, 국토부)

○ 유권해석을 통해 **실내외 체육시설**을 국가소유 폐하천 부지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에 포함**('16.1/4, 해수부)

④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 (현황) **학교체육시설**은 숫자가 많고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 가능하나, **학교장의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주민개방이 미흡**

* 학교 체육시설 현황('14년): 실내체육관 9,564개 / 운동장 11,519개

** 학교 운동장의 평일(주간) 개방률(80%)은 높으나, 휴일 및 평일 저녁(일몰 후)은 개방(40%) 미흡(교육부, '15.5월)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도 **온라인 예약시스템 미흡***, **일부 동호회의 독점적 사용** 등의 문제점 존재

* '14년말 기준 공공체육시설 21,317개,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지자체 229곳 중 109곳

□ (개선방안) 학교체육시설 및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 각급학교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16.4/4, 교육부)

* 개방학교에 대한 관리인력 지원, 책임보험 보험료, 방과 후 체육프로그램 지원 등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문체부)'으로 지원

○ 온라인 예약시스템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예약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17년, 문체부)

※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과 같이 旣 구축된 시스템은 이를 활용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독점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16.2/4, 문체부)

1-2) 스포츠 산업 육성

1) 스포츠 시설업

① 골프장 제도 개선

□ (현황) 골프는 **연간 이용자가 3천만명**에 달하고 시장규모가 15조원(스포츠산업의 38%)에 이르나, **높은 이용료*** 등으로 대중화에 한계

* 1인당 총 비용: 25~26만원 / 그린피(21만원,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주말) + 캐디(1인당 2~3만원) + 카트비(1인당 2만원)

** 한국의 캐디피는 8~12만원으로 일본(2.5~4만원)의 3배 수준

○ **회원제 골프장**은 최근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

* 골프장 영업이익률: (회원제) △4.5%, (대중제) 27.4% → '14년 전국 234개 회원제골프장 중 86개소 자본잠식(한국레저산업硏, '15.5월)

-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회원 전원 동의 · 자금조달 애로*** 등이 걸림돌로 작용

* 旣 납부된 회원 입회금(보증금) 반환에 막대한 비용 소요(예: L 골프장의 경우 220억원 반환 필요)

□ (개선방안) **이용료 인하 유도** 및 회원제의 **대중제로의 전환** 촉진

○ 골프장의 **캐디 · 카트 선택제 확대***('16.2/4, 문체부)

* 64개 대중골프장 참여중('15.12월) → 150개소 이상으로 확대('16.2/4)

○ 회원제의 대중골프장 전환을 위한 **회원동의 요건 완화**
(회원 100%동의→ 80%이상 동의, 체육시설법 개정*, '16.2/4, 문체부)

*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령 18조(회원 보호) 유권해석을 통해 회원전체 동의 요구 (개정) 요건을 완화(80% 등)하여 법률에 명시

○ 회원제의 **대중골프장 전환**에 대한 **특별 융자 프로그램** 마련
(국민체육진흥기금 활용, 시중 금리보다 1%p 낮게 운영, '16.2/4, 문체부)

□ (기대효과)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통한 수요 확대 및 **대중제 골프장 전환** 촉진

* 캐디 · 카트 미이용시(4~5만원) 인하 효과

② 캠핑 등 규제 개선

□ (현황) 새로운 여가문화로 **캠핑·산림레포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지 및 시설 설치규제 관련 애로 존재**

* 캠핑인구: ('09년)40만명 → ('13년)130만명 → ('15년)300만명
캠핑장 수: 전국 1,849개('16.1월) / 산업규모: 4천억원('13년)

○ 야영장은 건축법상 강의실·생활관 등 대규모 건축이 수반되는 **'수련시설' 개념이 준용**되면서 과도한 **입지규제** 적용

- 야영장이 입지하기 좋은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에는 야영장 설치 불가

○ **농지전용**을 통한 야영장 설치시 **허가 가능면적이 1,000㎡로 제한**

○ 산림내 **설치가능한 레포츠시설***이 **소수 종목으로 열거**되어 **신규종목 도입에 제약**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 (개선방안) **입지·시설설치 규제개선, 국유림 활용** 등으로 **야영장·산림레포츠 등 활성화**

○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 신설**하고,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야영장 **입지 허용**
(건축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6.1/4, 국토부)

○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 확대**(현행: 1천㎡→개선: 3천㎡)
(농지법 시행령 개정, '16.3/4, 농식품부)

○ **국유림의 산림사업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여, **대규모 친환경 야영장 조성**(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16.4/4, 산림청)

* 국유휴양림 예정지 중 최적지 발굴('16년 中) → 민간 사업자 선정·계약 체결('16년 下)

○ 산림내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신규 레포츠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포괄적 근거규정 마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2/4, 산림청)

* 암벽등반, 로프체험시설, 레일바이크 등 추가

2) 스포츠 용품업

□ (현황) 스포츠 용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웃도어·양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기업이 대부분 시장 점유***

* 글로벌 브랜드(예: N사, A사 등)가 국내시장 70% 이상 점유

○ 스포츠기업의 **R&D 자금 활용이 미흡**

○ 미래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저변확대 애로****

*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은 꾸준히 성장('12년 3,206만대 → '14년 3,680만대)

**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별도 면허 발급이 필요

□ (개선방안) **R&D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스포츠 강소기업을 육성**

○ (R&D) 스포츠산업 투자 목적의 **R&D 자금 확대***

* 스포츠산업 R&D 지원사업(억원) : ('15)130 → ('16년)141

- 수요조사·공모 등을 홍보하여 **스포츠 관련기업이 소재분야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 유도**('16.1/4, 문체부·산업부)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1,168억원),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324억원) 등

○ (자금) **유망 스포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확대 검토('15년 385억원 → '16년 총 785억원 → '17년 총 1,385억원 → '18년 총 1,985억원 조성 목표, 정부와 민간 50%부담)

* 국내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지분투자, 프로그램 개발 관련 융자 등 제공

-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규모 확대**('15년 180→'16년 540억원), 우수기업 **금리 인하**(△0.5%p) 및 **무형자산 가치평가*** 도입 ('16.2/4, 문체부)

* 기업의 무형자산(선수, 이벤트, 기술, 광고권 등)을 담보로 인정

○ **(유망기업 육성)** 매출규모가 작아 중기청의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서 제외된 **스포츠기업***을 **선별·지원**
('16.2/4, 문체부·산업부·중기청)

* 지원대상 예시: (기존)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 (개선) 연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 **문체부**가 **대상 선정 및 재원을 부담**하되, 중기청·산업부의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컨설팅(중진공), 디자인 개발*** 등 패키지 지원

* 산업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5년 366억원)

○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자전거'에 포함**하여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자전거법 개정, '16.4/4, 행자부)

* 최고속도 및 무게 제한, 구동방식의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제도보완 장치를 함께 강구(자전거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16.4/4, 행자부·경찰청)

3) 스포츠 서비스업

① 동아시아 프로스포츠 교류 활성화

□ **(현황)** 유럽은 축구 챔피언스 리그 등 인접 국가간 **프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활용 미흡**

* UEFA챔피언스 리그: '55년부터 시작, 유럽 전역의 축구 프로팀 중 선별된 32개 팀이 참여하여 리그 및 토너먼트戰 개최

○ 프로 스포츠 국가대항전과 관련된 국내·외 **관광 등 연관 산업**의 발전도 미흡한 상황

※ [사례] 종목별 프로팀 국가대항전 운영 현황

· **(축구)** '03년부터 '07년까지 한·중·일 챔피언스 리그 개최하다가 **AFC 챔피언스 리그로 확대·개편**(아시아축구연맹 주관)

· **(야구)** 한-일-대만 프로리그 우승팀이 경기를 치르는 '아시아 시리즈'를 非 정기적으로 개최('13년 대만에서 마지막으로 개최)

· **(배구)** 한-일 남·여 프로배구 우승팀 대항전을 非정기적으로 개최('15.4월)

□ (개선방안) 농구, 배구, 야구 **동아시아 국가간 정기 대항전을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관련 관광 활성화

○ **한·중·필리핀 프로농구 리그**('15.9월)*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한·중·일 **배구**('16년), **야구**('17년) **등으로 정기리그 확대**(문체부)

* 한국(2개팀), 중국(1개팀), 필리핀(1개팀) 참여하여 4일간 7경기 리그전 실시, 평균 3,000여명 관람(외국인 500여명, 평상시 외국인 관중: 100명 미만)

○ 국가 교류전 **관련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문체부-여행업계 협업), 관련 상품 **홍보 지원**(예: 관광공사 프로모션 행사 개최)

* (예시) 프로스포츠와 응원문화(야구장 응원, 치맥문화 등), K-pop 등 한류공연을 연계하여 중국·일본 관광객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

② 스포츠 에이전트 육성

□ (현황)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선수관리·마케팅·홍보 등 **연관산업 발전 지체**

* 주로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협상 및 신규입단, 이적, 광고출연 등을 담당

○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01년 에이전트**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불합리한 규제 잔존****

* 부칙을 통해 시행시기를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함(야구규약 171조)

**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1명의 선수만 대행 가능(야구규약 30조)

□ (개선방안)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 및 **우수 에이전트 육성** 프로그램** 마련('16.4/4, 문체부)

* 대리인의 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에이전트 pool 마련 등

○ **프로야구의 에이전트 제도 시행시기를 결정**하고,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을 개선**('16.4/4, 문체부·한국야구위원회)

○ **스포츠 이벤트, 선수 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매니지먼트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펀드 활용 지원사업* 추진, '16.3/4, 문체부)

* 국내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지분투자, 프로그램 개발 관련 융자 등 제공

※ [사례] 미국 IMG社

▪ 종합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社로, 골프·축구·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 선수들의 연봉협상, 일정관리 등을 담당

· 변호사 출신 마크 맥코맥이 1960년 창업하여, 프로골퍼 아놀드 파머와 계약을 맺으며 '스포츠에이전트'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회사

· 패션사업과 각종 스포츠 경기 리그 운영과 중계권 사업을 통해 사업 확장

· 현재 30여개국 60여개 지사를 운영, 전세계 유명 스포츠 스타의 70%를 담당

1-3) 스포츠 저변 확대

① 학교체육 활성화

□ **(현황)** 다양한 학교체육 활동에도 불구,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

○ 학교 체육활동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이 미흡***

* 지자체 조례로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4개 지자체(평택, 부천, 하남, 포천)에 불과

○ 학교 체육활동과 지역사회의 스포츠 활동 간의 **연계 부족**

□ **(개선방안)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스포츠 저변 확대

○ **학교체육 및 방과후 활동**을 위해 학생이 공공체육시설 활용시 **사용료 감경의 법적근거 마련**(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16.2/4, 문체부)

* (현행) 지자체 조례로 규정시 사용료 감면 가능
(개선) 시행령의 감경가능 조항에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추가

○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체육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체육교육협의체를 구축 확대**

* 지역연계 학교체육 협의체: ('15)50개 → ('16)100개 → ('17) 177개

② 생활체육 활성화

□ **(현황)** 스포츠 동호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자립기반 미흡***

* 동호인 수(만명): ('08)309→('14)455 / 클럽 수(만개): ('08)9.5→('14)10.1 (주요종목: 축구, 생활체조, 배드민턴, 육상, 테니스 順)

○ **동호인 리그대회**('15년, 축구, 야구 등 6개 종목)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심판 및 운영요원 수당, 경기용품, 시상품 등을 종목당 최대 연 3.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종합형 스포츠클럽**(K-스포츠클럽)***을 육성**('13년: 9개소→'15년: 30개소) 하고 있으나, 아직 수익기반 미흡

* 지역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지도자·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클럽당 최대 3억원을 3년간 지원, 회비를 통해 수익 창출)

○ **생활체육 지원사업과 전문체육 지원사업이 별개로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 미흡

□ **(개선방안)** 스포츠클럽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리그대회 차등지원, 스포츠 사회적기업 육성** 등 추진

○ 리그대회 **참여인원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리그대회 **차등 지원 및 지원종목 확대**('15년: 6종목→'17년:15종목, 문체부/국민체육진흥기금)

* (현행)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풋살, 야구, 농구 → (개선) 배드민턴, 탁구 등 추가

○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16.2/4, 문체부)하고, 단계적으로 수익성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유도**

* 회원 수와 구성, 수입 등 재정자립도, 경영진 역량 제고, 시설 운영 등

** 정부지원이 종료('15년말)된 종합형 스포츠클럽(9개, '13년 설립)부터 시범 실시

[사례] 영국은 '90년대까지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직접 보유·운영 → 자율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약 1/3의 지자체 체육시설을 사회적기업이 운영, '14년)

○ **생활체육 단체와 전문체육 연맹의 통합***(1종목 1연맹체) **확대**

* (현행) 대한사이클연맹(전문체육) + 전국자전거연합회(생활체육) = 전국자전거연맹('15.8월) → (개선) 축구, 야구, 골프 등으로 확대('16년)

(2) 공유경제 활성화

◇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 등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

* 세계시장규모(억불, Massolution): ('10) 8.5, ('11) 14.7, ('12) 27, ('13) 51, ('14) 100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일부 기업은 **단기간 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우버: 기업가치 510억불(세계 주요 스타트업중 2위, '15.9월)
에어비앤비: 기업가치 255억불(세계 주요 스타트업중 3위, '15.9월)

○ **모바일 기술 발전** 등으로 향후 **빠른 성장**이 **전망***되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시행**

* 공유경제 세계시장규모는 '25년 3,350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PwC)

**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영국) 공유도시사업(리즈, 맨체스터) 시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유도시 지정, (EU) EU2020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 >

주요 분야		서비스 제공·이용 방식	대표적인 해외기업
숙박		빈집·빈방을 숙박서비스에 제공	AirBnB
교통	차량공유	모바일기반 무인렌트업, 시간단위 대여·이용	Zipcar, Citycarshare
	승차공유	비상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	Uber, Lyft
금융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펀딩 대가로 지분 취득, 배당수익 등 수취	GoFundMe, KickStarter
	대출형	펀딩 대가로 약정된 금리·원금 수령(P2P 대출)	
	기부형	기부금, 개인적인 프로젝트 자금 모집	EquityNet, CrowdCube
	보상형	펀딩 대가를 물품으로 수령(일종의 사전판매)	Lendingclub, Zopa
공간		매장, 회의실, 주차장 등을 공동 이용	LiquidSpace, JustPark
재능		노동(청소, 수리 등), 지식·경험 등 공유	Taskrabbit, Handy

◇ **우리나라**도 우수한 ICT 인프라에 기반하여 **대도시·20~30대**를 중심으로 **차량공유 등이 빠르게 확산**

○ 아직 **초기 단계**이나, 세계적인 **ICT·모바일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 인터넷보급률 98%, 이동전화 보급률 111%, 스마트폰 보급률 73%

⇒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 新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2-1) 공유경제 추진방향

□ **(기본방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유연하게 대응**

○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제도권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창업 및 새로운 기업 활동 촉진

- **'모바일 플랫폼 기반 중개거래'**를 특성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직접 거래' 중심의 **기존 법제에 수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소비자 보호, 위생·안전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공유경제 특유의 자율규제 시스템 최대한 활용**

○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접근**

□ **(분야별 추진전략)** **성장가능성, 시장 및 수요자의 요구, 이해관계 충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 선정

① **성장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장의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숙박공유·차량공유·금융 분야부터** 제도 개선 추진

- 다만, **이해관계 충돌 등이 예상**되는 경우(예: 숙박분야)는 **규제 프리존**에 **시범 도입** 등 유연하게 대응

<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의 주요 내용 >

① **숙박 분야**

- **숙박공유**에 대한 **시장 요구 존재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권내로 편입
- 다만, 기존 숙박업자 등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설계**

② **교통 분야**

- **시장이 형성**되어 **빠르게 성장**중인 **차량공유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추진

③ **금융 분야**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15.7월) 및 시행('16.1.25일)
  * 투자자 유형(일반, 전문투자자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공모증권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 모집 가능

② 기타 **공간·재능 분야*** 등은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 예시: (공간) 매장, 회의실, 주차장 등을 공동 이용
(재능) 노동(청소, 수리 등), 지식·경험 등 공유

2-2) 숙박 분야

◇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대도시 ·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에어비앤비: 191개국 3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의 객실 확보, '15년 4,000만명 이용(누적 7,000만명 이용)

◇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에 애로

*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 신고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

○ **미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으로 **적법 숙박업소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악화**(예: 변질영업, 소음 등), **탈세** 등 부작용 우려

① '(가칭) 공유 민박업' 신설

□ **'공유 민박업'을 신설**하여 **주거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 하에 등록제**로 운영하고, **영업가능일수 제한**

- **도시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일간** 숙박서비스 제공 가능

*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전용주거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허용 가능

< 기존 유사 민박업과의 비교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공유민박업
허용지역	도시지역	(준)농어촌지역	도시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 (다만, 조례로 전용주거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허용 가능)
이용자	외국인	내 · 외국인	내·외국인
연간 영업가능 일수	365일(상시)	365일(상시)	120일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아파트, 연립 · 다세대주택	단독 · 다가구주택	단독 · 다가구, 아파트, 연립 · 다세대주택
규모 제한	230m^2 미만	230m^2 미만	230m^2 미만

② 향후 추진계획

□ 규제프리존(부산·강원·제주) 도입후 **전국 확대** 추진

○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규제프리존**(부산 · 강원 · 제주)에 **우선 도입**(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 '16.2/4)

○ 규제프리존 도입 경과 등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대 추진**
((가칭)숙박업법* 국회 제출, '17.6월, 문체부)

* 전국 확대 추진시 공유민박업을 포함하여 개별법률(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산재된 숙박업 규정들을 통합,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문체부)

< 공유민박업 관련 주요 내용(안) >

1 공유 민박업 등록기준

① **(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에 등록

② **(인적요건)** 해당 시 · 군 · 구의 **주민**

③ **(물적요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로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중 하나에 해당

④ **(허용지역)** **도시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전용주거 및 (준)농어촌지역 가능**

⑤ **(규모제한)** **연면적 230m^2 미만**

2 공유 민박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가능일수)** **연간 120일 이내**

② **(서비스기준)** 안전·위생·시설기준 등은 **유사 민박업**(도시민박업) **규정을 고려**하여 규정

3 공유 민박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① **(자율규제)** 공유민박 중개자의 **평판조회시스템**(후기, 평점 등) 운영 등

* 공유민박 중개자는 공유민박업자에게 영업일수를 자율 고지토록 하고, 숙박중개 플랫폼에 이용자와 공급자가 서로 평가할 수 있는 평판조회시스템 운영

② **(관리·감독)** 필요시 공유민박 중개자에 대한 **자료 요청**, 관계기관 **수시 합동단속,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 등

2-3) 차량공유(카셰어링) 분야

◇ 국내 차량공유시장은 **대도시 · 20~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회원수(만명): (쏘카) ('13) 4 → ('15) 135 / (그린카) ('13) 12 → ('15) 120

○ 제도적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기반 **무인대여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중

< 차량공유 등록기준 개선 경과 >

- '14. 9월, 무인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사무실) 확보 의무 면제
- '15.12월, 무인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영업소 확보 의무 면제 및 차고지 확보 의무 완화

◇ 다만, **무인대여 방식 차량공유**의 **핵심 요소**인 **운전부적격자 판별, 예약소**(주차장) **확보** 등에 있어 **애로가 존재**

① 면허정보 제공범위 확대 및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 **(현황)** 차량공유업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의 **면허정보를 조회**하여 **운전부적격 여부 확인중**

○ 그러나, **제3자**(차량공유업체)**에 의한 면허정보 조회의 법적 근거 미흡, 면허정보제공 범위 협소*** 등으로 **운전부적격자 판별 애로**

* 면허보유 여부만 확인 가능, 면허정지 여부·면허종류(1종, 2종 등) 등은 확인 불가

○ 차량공유의 특성상 회원가입 및 이용시 **실시간 자동접속이 필요**하나, 자동접속에 따른 **면허정보시스템 시스템 과부하** 등의 우려 존재

< 운전부적격자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 >

- 회원가입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 발생('15.9월)
- 원동기(오토바이) 면허만 있는 미성년자가 2종 면허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 발생

□ (개선방안)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6.3/4, 국토부)

○ 경찰청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면허정보의 범위도 면허정지 여부·면허종류 등**까지 **확대**

○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16.2/4, 경찰청)

* 경찰청 면허정보시스템 서버를 확대하고, 국토부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 중개하는 시스템 구축('17.2/4, 국토부·경찰청)

② 예약소(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②-1 지자체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 확대

□ (현황) **일부 지자체**(서울·인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공유업체에 **공영주차장 이용 허용** 및 **주차요금 감면중**

○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공영주차장 제공에 소극적**

□ (개선방안)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차량공유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조치

○ **유권해석**을 통해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공영주차장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16.1/4, 국토부)

○ **부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에 차량공유 전용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개선**(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6.7월, 국토부)

* (예시) 차량공유 전용주차공간 제공시 법정 주차장 확보면수 완화 등

** (현행)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 → (개선) 지자체장 직권으로 설치

②-2 예약소 신고서류 재 정비

□ **(현황) 예약소 설치시** 주차장 사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지역별 렌터카조합에 신고**하고 있으나, 지역별 요구서류 상이

< 지역별 예약소 신고시 필요 서류(예시) >

- A지역 조합(7개 서류): 신고서, 주차료 세금계산서, 주차장 사업자등록증, 건축물·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주차장 실사사진
- B지역 조합(3개 서류): 신고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주차장 실사사진

□ **(개선방안)** 차량공유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예약소 신고서류 재정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6.7월, 국토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주차대수, 사용기간, 주차장 사용권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허용하고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③ 차량공유 시범도시 지정 등 도입 촉진

③-1 차량공유 시범도시 지정

□ 차량공유 활성화를 통한 도심내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공유 시범도시 지정**(MOU체결, '16.4월, 국토부)

○ 차량공유업체에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범도시 내 **편도서비스 활성화** 등 혜택 제공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시설물(예: 백화점 등) 소유자가 차량공유업체에 주차장 제공시,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가능

③-2 임대주택에 차량공유 도입 확대

□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뉴스테이에 도입**('16.4/4, 국토부)

*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중(55개 단지에 67대 카셰어링 차량 운영중)

** 일정규모(500세대) 이상의 단지,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에 적극 도입

별첨	금융 분야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금융분야 공유경제**는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

* 펀딩에 대한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기부형, 보상형으로 구분

◇ 세계 시장은 **증권형과 대출형**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14년 162억달러(전년대비 167%↑), '15년에도 2배 이상 성장(Massolution)

1. 국내현황: 대출·기부·보상형은 既도입, 증권형은 '16.1.25일부터 시행

유형	보상방식	근거 법령	주요 내용	주요 분야
기부형	보상 없음	기부금품법	1,000만원 이상 모집시 기부금품 모집자로 등록	사회복지, 문화예술
보상형	비금전적 혜택 (일종의 사전주문-판매 형식)	전자상거래법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20회) 또는 거래규모(1,200만원)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아이디어 상품, 문화예술
대출형	약정된 원리금	대부업법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	벤처투자, P2P 대출
증권형	지분(주식·채권 등)에 따라 이익(배당·이자 등) 배분	자본시장법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등록	벤처투자

* 온라인 펀딩플랫폼이 직접 대부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2. 최근 제도개선 내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16.1.25일)

□ 자본시장법 개정('15.7월)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16.1.25일 시행)

○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금액을 제한***하고, 공모증권 **발행기업**(사업경력 7년 이하)은 **연간 최대 7억원**까지 자금 모집 가능

<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

	동일기업	연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갖춘 투자자[1]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2]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 등
2) 금융기관,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조합, 개인투자조합, 전문·적격엔젤 등

□ **(기대효과)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화되어 **자금 조달 기회 확대** 예상

(3)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헬스케어** 산업은 유전자·줄기세포 등 **바이오기술 혁신**,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급성장 전망**

*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13)330조원 → ('20)635조원 (연평균 9.8%↑)

○ **해외**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을 **주요 혁신 성장동력으로 주목**하여 **규제 개혁 및 R&D 지원 강화** 추진중

* (미국) 혁신 의약품·의료기기 허가기간 단축, 의료용 앱 개발 등 규제 완화 추진

* (일본) '재생의료법' 시행 등을 통해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승인 기간 단축 추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경쟁력*, 세계적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 인프라** 등 잠재력 보유

* 전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7개중 4개가 우리나라 제품이며, 세계최초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의약품) 상용화에 성공('12년)

** 세계적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14년 한국 7위), 바이오뱅크(약 60만명), 건강정보 DB(약 100만명) 등 빅데이터 기반 보유

⇒ **아직 초기단계**이며, 제품 개발에 **상당기간이 소요**(5~10년)되는 산업 특성상 **시장 선점이 중요**

◇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조달 여건 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토대 마련**

○ **건강관리서비스 등 ICT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개념 **융합제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등 **제품 개발 인센티브**를 확대

○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3-1) 新서비스시장 창출

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현황)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ICT ·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이 미래유망산업으로 대두

* 주요국 초고령사회 도달 연도 : (韓)2026 (日)2006 (佛)2018 (美)2036

** GDP 대비 국민의료비('00→'13, %) : (韓)4.0→6.9 (日)7.4→10.2 (佛)9.5→10.9 (美)12.5→16.4 (英)6.3→8.5 (中)4.6→5.6

○ 우리나라는 **ICT 강국,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뷰티 · 한방 등 연관산업 발달**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 보유

○ 그러나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건강관리서비스법('10.5월, 변웅전 의원안),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11.4월, 손숙미 의원안)의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

<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

○ **(일본)**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민간에서도 전문업체·보험업체 자회사 등에 의한 건강관리 시장 형성

○ **(미국)** '90년대 중반 의료비가 급증하자 전문적 건강관리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급성장*하여 Healthways, Cigna 등 대형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

* 미국 건강관리서비스시장 규모 : '88년 1.2억불 → '08년 22억불

○ **(호주)** 공공에 의한 생활습관개선 서비스(Lifescript 프로그램 등)와 민간주도의 건강관리가 혼용되어 있으며, Alere 등 글로벌 건강관리서비스기업 존재

□ (개선방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 지원('16.3/4, 복지부)

○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

<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예) >

① 정의 : 건강의 유지 ·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 · 예방적 서비스

② 범위

- 의료기관의 진단 ·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ex. 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 ·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ex. 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이를 고지)
- 맞춤형 영양 · 식단 ·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 금연 ·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 실시('16.2/4, 복지부)

-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선을 최소화

②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 **(현황)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15.12월 국회 통과, '16.6월말 시행

○ 생명윤리법 시행시기에 맞춰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한 유전자 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항목을 구체화**할 필요

□ **(개선방안)** 의료계·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검사항목 목록* 규정**(복지부 고시 제정, '16.6월, 복지부)

* 블룸 증후군(Bloom syndrome) 보인자 검사 등 미국, 영국 등에서 허용하는 항목 등을 고려하여 허용목록 결정 예정

3-2) 新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①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 **(현황)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등장**

○ **의료기기 분야**는 **사전회신제도가 운영*** 중이나, **의료서비스 분야** 등은 허용범위, 규제적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존재**

*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등급, 규제 적용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회신(「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개선방안)** 의료서비스 분야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6.2/4, 복지부)

○ 신기술·융복합 등으로 인해 **법령·지침 등의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

* (예시) 헬스케어업체에서 개발중인(또는 개발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 또는 건강관리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회신

②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합리적 약가기준 마련

□ **(현황)** 최근 의약품 **수출 실적이 증가**하고 다국적 제약기업에 국내 **개발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

* 국내의약품 수출실적: ('10) 1.5억불 → ('14) 2.4억불, 연평균성장률 11.9%

○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대비 높은 약가를 적용받고 있으나, **높은 개발·생산원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

* 오리지널 대비 약가 수준(%): (바이오의약품) 70 (합성의약품) 54

□ **(개선방안) 글로벌 진출 신약 ·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기준 마련**

○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의 약가 **평가기준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기준 마련, '16.3월, 복지부)

-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국내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고려

* 세부평가 기준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규정)마련('16.2월)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2월) → 시행(3월)

○ 바이오의약품 특성,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16.10월, 복지부)

③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생산시설 입주 허용

□ **(현황)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으로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첨복단지법('16.1월 공포, '16.7월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생산시설'을 첨복단지내 허용

□ **(개선방안)**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범위(면적) 등 세부 기준안*** 마련 (첨복단지법 시행령 개정, '16.7월, 복지부)

*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2 이하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④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

□ (현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중**이나, **'16년말 일몰** 예정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개선방안)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일몰기한 연장**('16년말 → '19년말)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6.4/4, 기재부)

* 세액공제율은 성과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⑤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관련, 제품별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3D 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의 **인증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既 **마련**

*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식약처, '15.12월)

○ 다만, **3D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품별 가이드라인**도 필요

□ (개선방안)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16.10월, 식약처)

* (예시) ①치과·정형외과용 임플란트, ②뼈/연골/피부 재생용 지지체 등

3-3)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

□ (현황)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年 30억원)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 유예중

○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변동성이 커 3년 내에 요건 충족 곤란**→성장가능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우려

* (예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개발기간이 통상 약 5~10년 정도

□ (개선방안)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6.2/4, 금융위)

* 매출액 요건(30억원) 미충족시 (현행) 관리종목 지정 3년 유예
→ (개선)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 추가 연장(최대 5년 유예)

(4)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

◇ 대학 해외진출은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도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영역**

* 32개 국가의 대학들이 해외로 진출('15.12월, 뉴욕주립대 교육연구팀)
(예: 중국 닝보노팅엄 대학교(중국 저장완리학원 + 영국 노팅엄 대학))

** 유학수지(백만불): ('11)△42.6, ('12)△40.8, ('13)△42.0, ('14)△36.2

○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엔지니어링·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경북대·인하대·동서대 등이 이미 해외에 진출**

◇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데 있어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대학 해외진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현행 제도가 **대학의 국내설립·운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진출 추진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한계**

⇒ 다양한 형태의 대학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추진 대학을 **밀착 컨설팅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4-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 **(현황)** 국내대학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정보도 부족**

* '09년부터 대학간 계약을 통한 학위수여가 허용되었으나(교육부 고시), '14년에 1/2이상 학점취득 의무가 신설되어 시행중(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국내대학 프로그램 해외수출, 국내1년+외국3년 교육과정** 등의 경우 **국내대학 학위수여 불가**

[사례1] 타슈켄트 인하대(IUT, Inha University in Tashkent)

- **(설립·운영)** 설립·운영비용은 우즈벡 정부 및 국영기업이 일체 부담, 인하대는 교육과정 운영 전담('14.10월 개교)
- **(교육과정)** IUT의 교육과정은 인하대 본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
- **(문제점)** 현행 법령상 국내대학(인하대)에서 2분의 1이상 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IUT 학생들에게 인하대 학위수여 불가

[사례2] 경북대-유럽대학 '3+1 복수학위 프로그램'

- **(대상학교)** 폴란드 바르샤바대학·바르샤바공과대학, 영국 노썸브리아대학, 헝가리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학,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 등 5개 대학
- **(운영형태)** 경북대학생은 본교 3년·유럽대학 1년 수학, 유럽대학생은 학사과정 3년 중 본교 2년·경북대 1년 수학하여 복수학위 수여
- **(문제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4년) 전에 MOU를 체결하여 현재는 복수학위 수여가 가능하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17년) 경북대 학위수여 불가

○ 또한,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으로 작용**

<교육과정 공동운영 형태>

구분	내용
복수·공동학위 (Double·Joint Degree)	두 대학이 각각 학위를 수여하거나(복수학위), 두 대학이 하나의 학위를 수여(공동학위)
트위닝 (Twinning)	학생들이 두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되, 학위는 하나의 대학에서만 수여
프랜차이즈 (Franchise)	한 대학이 다른 대학에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가하고 학위는 하나의 대학에서 수여
아티큘레이션 (Articulation)	여러 국가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누적되어 학위를 수여

* 국내법(고등교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기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개선방안)** 국내대학 학위수여를 위해 외국대학 등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교육과정 공동운영 **우수사례 배포**

○ 학위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6.8월, 교육부)

* (예시) 국내대학 프로그램 해외수출, 국내1년+외국3년 교육과정 등

○ **국내·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포**하고,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대학에 **맞춤형 컨설팅 등 정보제공 확대** ('16.8월, 교육부)

4-2) 해외캠퍼스 설립기준 마련

□ (현황) **국외분교·해외캠퍼스·국외교사시설 등** 형태의 교육시설 해외진출시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애로사항 발생**

<분교·캠퍼스 개념 비교>

구분	설립·운영	학과	학위	예시
캠퍼스	본교에 종속	본교와 중복불가	본교 명의	연세대 송도캠퍼스
분교	본교로부터 독립	본교와 중복가능	분교 명의	연세대 원주캠퍼스

○ **국내캠퍼스**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를 통해 설립가능**하나, **해외캠퍼스는 법적근거 미비***

*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대학의 위치변경(캠퍼스)을 '국내'로만 인정

○ **국외분교**는 구체적 설립·운영 기준*은 있으나, 현지국가 법령 및 설립절차 **정보부족, 재원 마련상 한계 등으로 추진사례 전무**

*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은 현지국가의 대학 설립인가 후 받게 됨에 따라 컨설팅으로서 **실효성 부족**

* 교육부 인가 신청 전 단계로서 해외진출시 교육과정, 소요자금 조달, 관리운영 등에 대해 컨설팅

□ (개선방안) **해외캠퍼스 허용**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 폐지 등**을 통해 **대학 해외진출**을 촉진

○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하여 **해외캠퍼스 설치 법적근거 마련**(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16.8월, 교육부)

- **현지국가 법령상 위법사유가 없는 한** 해외교육시설 취득 등에 대한 판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전컨설팅 폐지**(「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6. 8월, 교육부)

3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1차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유통, 가공, 농어촌 관광 등 **연관산업은 성장세****를 시현

* GDP 비중(%) : ('02) 3.6 → ('08) 2.4 → ('14) 2.3

** 식품산업(제조)매출(조원) : ('03) 39.6 → ('08) 55.2 →('13) 77.3

○ **자영업·영세법인 중심**의 생산·유통구조, **기업진입에 대한 거부감, 규제** 등으로 인해 **자본투자가 부진**

* 농업인구 1인당 농업자본스톡(천불, FAO, '07년) : (한국) 15.12, (미국) 256.8, (일본) 234.6, (프랑스) 184.7, (독일) 133.2, (영국) 105.6

○ FTA로 **관세가 인하***되고 **한국産 프리미엄 농수산식품**에 대한 **해외수요 확대** 등 수출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

* 한·중 FTA : 수산물통조림·과실젤리·잼·해삼 등 관세(5%) 즉시 철폐
한·미 FTA : 미국의 식품 일반관세는 4~20%이나, 한국산은 무관세

◇ 한·중 FTA를 계기로 **농림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①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유도**

- 과도한 정부지원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업형 자본투자·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

* 농가소득('14) : 농업소득 29.5%, 농업외소득 42.3%, 이전소득(정부지원) 19.5%

② 생산중심에서 **가공·판매를 결합한 6차산업화 추진**

* 국내농가의 86%가 1차산업(생산)만 영위

- **가공·유통, 관광산업화** 등을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 유도

③ **FTA를 활용**하여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 상품화**

④ **농어촌고령화 진행 + 귀농귀촌 관심 증가 → 젊은 인력 유입 촉진**

- 주택 취득지원 등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화**하고, **어업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농어촌 일자리 창출**

(1) 민간투자 활성화

◇ 농림어업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하고, **외부자본의 투자유입** 및 **기업적 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1-1) 농업특화단지 조성

□ **(현황)** 농업분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본투자·R&D 투자**가 필요하며 **영세농 위주의 생산체계**로는 규모의 경제에 한계

* 농업법인 평균출자액 2.8억원, 평균종사자수 6.8명('14년 통계청)

○ 원예 등 **고부가 재배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해외진출에도 대규모 경영체가 유리하나, **농업계의 거부감**이 높아 진전에 애로

* (사례) 화성 농식품수출전문단지內 기업형 첨단유리온실 운영에 대한 농업인 단체 반발 사례 → 중소기업 A사가 인수 후 토마토생산·수출 시작('16.1월)

○ 새만금지역 등에 수출중심 농업단지를 조성중이나, 대규모 농업법인의 **관심이 저조**

* 새만금 투자 MOU 체결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1개에 불과

□ **(개선방안) 수출중심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특화단지 조성**('16년~, 농식품부)

○ **(대상지역) 화옹간척지**(경기 화성)와 **농생명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검토중인 **새만금 지역**을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인센티브 제공)**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 장기임대** 허용

- MOU 등 사전요건 충족시 **수의계약 허용**(새만금 지역)

○ **(인프라 조성)** R&D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 인프라 구축**

- **(R&D)** 수출시장별 유망품목 정보분석 등을 토대로 **재배·가공 기술 개발***, 포장디자인 등을 위해 **R&D지원 강화****

  * 예) 환경제어시스템, ICT 활용 재배장비·시스템, 수확 후처리 시스템 → 향후 "농업생산 시스템" 자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패키지化

  ** 식품클러스터의 R&D시설(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패키징센터)과 연계

- **(생산·제조)** 상하수도, 진입도로, 유리온실 기초처리 공사 등 **기반 시설 지원*** 및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시설에 대한 저리융자 추진**

  *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한전 등이 참여하는 기반시설 T/F 구성

- **(물류·마케팅)** 생산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한 물류체계 구축 지원, **특화단지 자체를 "브랜드"로 육성**하여 마케팅 효과 도모

○ **(규제완화)** 새만금 지역의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하여 **농지 활용·경영활동 관련규제 완화** 추진(규제프리존특별법에 반영,'16.2/4)

-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전후방산업 제조시설 설치를 추가 허용***하고, 계획입지 시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 (현행) 농업생산시설, 농업인주택 등 예외적으로 인정 → (개선) 농기계·부품 제조시설, 농특산물 생산시설 등 연관산업 포괄적으로 허용

- 새만금 지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 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 **(기대효과)** 농업계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생산은 농업인이, 시설·R&D·가공·판로확보는 농업전문 기업이 수행**하는 분업구조 구축

1-2) 양식산업 선진화

① 기존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 (현황)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

* 어류양식 생산량(만톤) : ('10) 8.0 ('11) 7.2 ('12) 7.6 ('13) 7.3 ('14) 8.3

○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나, 초기 투자에 대규모 자본 필요

□ (개선방안)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를 촉진하고 스마트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외부자본이 유입되도록 제도 개편

○ (대규모 자본진입 허용) 초기 시설투자,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16.4/4, 해수부)

* 대상품목(안) : 참다랑어, 연어류(바다송어), 해조류 등

** (현행) 자산총액(5,000억원), 근로자 수(1,000명), 매출액(1,500억원) 이상 기업은 양식업 진입이 제한

○ (친환경 양식단지 활성화) 민간이 참여하는 IT·BT 기반의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지원**

* 순환여과시스템, 바이오플락, HACCP 등 생산 全과정에 친환경시스템 적용

** 전남 화순에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15~'16년) 중 → 2개 대상지 추가(~'19년)

<민간기업 투자 사례>

A기업은 새우 양식에 적합한 바이오플락 양식기술(미생물을 활용해 배설물, 찌꺼기 등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운영

▶ 안산 사업장 : '16년 완공 예정(민자 40억, 연간 100톤 생산가능)

▶ 당진 사업장 : 바이오플락 새우양식(민자 50억, 연간 50톤 생산)

② 외해양식 투자단지 조성

□ (현황) 외해양식은 내해양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적정입지 선정의 어려움, 높은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투자 지연

* 외해가두리시설, 관리선박, 자동 급이기, 원거리 모니터링 장비 등 필요

○ 특히, 면허희망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어촌계, 인근 양식업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장 후보지 선정에 애로**

* (사례) 연어양식장 조성하려던 B사는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조정 애로로 사업추진에 난항 경험

□ **(개선방안)** 양식전문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망어종 중심으로 외해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규제 완화**(해수부)

○ **(규모제한 완화)** 기존 **외해양식장의 규모 제한을 완화(20→60ha)**하여 대규모 투자 유도(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16.2/4)

○ **(적합지역·어종선정)** 민간사업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해양식에 적합한 지역 및 어종을 미리 선정***하여 「외해양식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반영('17.2/4)

* (적합지역)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주민의견 등 수렴
(어종선정) 외해양식여건, 대내외 경쟁력 등 감안(예시: 참다랑어, 연어 등)

○ **(면허발급절차 개선) 외해양식 어업면허 희망자를 모집·통합조정*** 후 사업자 선정('16.4/4)

* (현행) 어업면허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인근 어촌계의 동의확보절차 필요 → (개선)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면허관련 이해관계자 통합조정

○ **(R&D)** 어종개발, 자연산종자 포획 및 수송기술*, 이동식 심해 가두리 및 침하식 어망 등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16년~)

* 참다랑어 양식기간을 단축(3년→2년)하여 조기 출하 가능

- '(가칭)**양식융합기술 투자포럼'을 창설**하여 양식기술업체와 민간 투자자 간 교류 활성화

* 노르웨이 중심의 '북대서양씨푸드포럼(NASF)' 벤치마킹

외해양식장 (외부)

외해양식장 (내부)

1-3) 산지의 효율적 활용 촉진

□ **(현황)** 산림녹화 정책 추진('73년) 이후, **보존 위주의 산림 이용**으로 산지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율적 활용이 미흡**

□ **(개선방안)** 민간주도로 **국공유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사유림 경영의 규모화·장기화** 유도

○ **(국유림 활용 촉진)** 산양삼 재배를 위한 **요존 국유림 사용허가 면적을 확대**하여 산림분야 6차산업단지 조성(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 '16.2/4, 산림청)

* (현행) 10ha 이내 → (개선) 100ha까지 허용하여 평창, 정선, 함양 등에 산양삼클러스터 조성 추진

- **국유림 특정용도**(산양삼, 버섯류, 약초류 재배 등) **사용허가 요건을 완화**(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 '16.2/4, 산림청)

* (현행) 주민 1/2 이상 동의서 필요 → (개선) 규정삭제 또는 1/3로 완화

- **임업소득 사업용 대부요율 인하**(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16.2/4, 산림청)

* (현행) 토지가격의 1% 이상 → (개선) 토지가격의 1% 또는 임업총수익의 10% 중 낮은 금액

-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대관령에 **'식물활용 6차산업 복합단지*' 및 '고산식물 정원' 조성** 추진('17년~, 산림청·강원도)

* 유용식물의 활용(건강증진, 항노화 등)을 위한 R&D 등 집중지원

○ **(공유림 경영 지원)** 공유림의 안정적 경영관리를 위해 **원목생산, 소득사업** 등에 대한 **세부경영 기준 마련**('16.2/4, 산림청)

* 현재 공유림 관리는 국유림과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부재

○ **(임목보험 도입)** 산림경영활동 정도,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임목보험 도입** 추진('17년, 산림청)

* 농산물·수산물은 품목별로 재해보험 대상이나, 임목은 제외

○ **(산지은행 도입)** 산림 소유, 임대차 현황 등 **실태조사를 거쳐 유휴산지를 장기 임대**하는 산지은행 도입 검토('16년~, 산림청)

* (예시) 산림조합에서 유휴산지를 임차하여 임업 투자자에게 장기임대하는 시범사업 추진

○ **(산림펀드 활성화)** 산림·임업분야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동화 펀드 신설 등 산림펀드 활성화** 추진('16년~, 산림청)

* 산림투자는 투자 회수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나 유동화 수단이 부족한 상황

1-4) 농수산 벤처 활성화

□ **(현황)** 농수산식품분야는 **열악한 창업환경*·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벤처·창업이 부진****

* 농어업기업 매출액('14년): 9.3조원(전체기업의 0.2%)

** 농식품 벤처기업 수('15년): 1,465개(전체 벤처의 4.7%)

○ 농식품모태펀드를 독립 운영중이나, **높은 기준수익률*** 등으로 투자 인센티브가 낮고 벤처캐피탈의 농림분야 **투자실적도 저조****

* 기준수익률(%): (중기모태펀드) 0~5, (농식품모태펀드) 0~7

**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비중('15년, %): (ICT, 게임) 34.4, (기계, 화학) 14.8, (영상, 공연 등) 13.0, (바이오) 15.2, (유통) 14.6, (기타) 8.0

□ **(개선방안)** 농수산벤처·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수산벤처투자 확대

○ **(벤처·창업기업 컨설팅 제공)** 경영·재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전담지원반**을 설치*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밀착보육서비스 제공**('16년 60개 기업, 농식품부)

* 권역(중부, 영남, 호남)별 창업지원 특화센터 구축,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수산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지역거점센터를 확대지정***(2→3개소) 하고 센터별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지원**('16년 70개 기업 지원 목표)

* 현재 부산, 제주 2개소가 지정·운영중이며, 공모를 통해 1개소 추가 지정 계획

○ **(농수산벤처투자 확대) 농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확충하고, 민간주도 맞춤형 투자프로그램 신설

- 농식품모태펀드 운영사 선정시 **기준수익률을 하향조정**(현행 7% → 5%)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도**('16.2/4, 농식품부)

- **농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성공 벤처창업인·벤처캐피탈 등을 **농식품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로 지정('16년~, 농식품부)

* (예시) 농업관련분야 창업경험자·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농업경영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경험자 등이 설립하거나 동 조건의 전문인력 1명이상 고용

▪ 농식품모태펀드 **운영사 선정시 가점** 부여, **모태펀드 매칭비율 상향** 등 우대 지원

- 농식품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 **크라우드펀딩을 유치**한 농수산벤처·창업기업에 **농림모태자금 투자** 등 농업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용 활성화('16년~, 농식품부)

* 투자 금액에 따라 상품을 보상해주는 현물상환(reward) 방식의 펀딩으로 운영

(2) 생산중심 → 가공·판매 + 관광 (6차산업화)

◇ 1차산업(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판매, 관광 등을 결합한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2-1) 농어촌 관광 활성화

□ **(현황) 농어촌 관광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는 저하****

* 연간경험률(%) : ('03)8.1 → ('06)8.5 → ('09)10.5 → ('11)13.8 → ('14)14.8

** 농촌관광만족도('11→'14년) : 관광인프라(73.2→69.7점), 콘텐츠(69.7→60.6점)

○ 농수산물 생산, 체험, 숙박, 식당 등을 결합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지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애로

* 개별시설별로 시설요건 등을 구비하여 지자체와 협의 필요

○ 어촌어항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수요가 있어도 **외부 민간 투자자의 진입이 사실상 제한***

* (현행)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경우 수협, 어촌계에 우선매각

□ **(개선방안)** 농어촌 관광개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신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 도입**(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 '16.4/4, 농식품부)

* 체험·관광을 경험한 경우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이후 농산물·제품 소비량도 증가 → 농가소득 확대에 매우 효과적

- 농촌 융복합시설에 **숙박업, 음식점, 체험시설, 농산물 판매,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

  → 사업자가 **사업포트폴리오를 창의적으로 구성** 가능

- 적극적 사업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규제 완화*** 및 **원스탑 인허가 시스템**** **구축**

* (예시) 생산관리지역·임업용 보전산지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일부로서 숙박업(일정비율 이하), 운동시설, 동식물체험시설 등 허용

** 지자체 인허가 전담창구에서 통합 One-Stop 서비스 제공

○ **(농어촌 민박 활성화)** 농어촌 민박에서 **석식 제공을 허용**하여 이용객 불편 해소(농어촌정비법 개정, '16.4/4, 농식품부)

* (현행)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제공만 허용

-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실제 어촌지역일 경우 **농어촌민박 지정 허용 추진**('17년, 해수부)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인 경우 어업, 관련산업,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편의시설 확충) 농업진흥구역 내** 도로와 인접한 농장에서 농산물 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방문객 주차장 설치허용**(농지법 유권해석, '16.1/4, 농식품부)

* (현행) 농업진흥구역 내 농장의 부속시설로서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불분명

- **지자체별 우수 사례 발굴**하여 전국 농가 등에 안내

○ **(어항의 관광자원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어항**을 **복합·관광자원**으로 육성

- 어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항시설 일부 구역을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어촌어항법 개정, '17년, 해수부)

* 입지여건이 뛰어난 어항(예시: 부산 다대포항)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복합형다기능어항으로 개발 추진

▪ 교통편의(철도역 등),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관광상품 개발 병행**

- 연안지역(어항, 항만구역 등)의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수상(水上) 레스토랑, 상업시설 등 조성** 추진('16년~, 해수부)

▪ 기존의 특화어항 개발*(다기능어항 · 아름다운 어항 등), 연안정비 친수사업, 해양관광개발사업 등에도 반영

* (예시) 경남 거제시는 능포항에 데크를 활용한 민간주도의 수상카페테리아 조성 계획

해외사례(미국 뉴포트 지역)

2-2) 가공·판매역량 강화

□ (현황) 농수산물의 단순생산에서 벗어나 **가공·유통·판매까지 연계될 때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생산·가공, 판매 등을 병행하는 농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에 불과

<농가 수 변화(단위 : 만호)>

종사자 구분	'12	'13	'14
1차 산업(생산)	102.2 (88.9%)	99.4(87.1%)	97.3(86.8%)
2차 산업(생산+가공)	1.2 (1.0%)	1.3 (1.2%)	1.3(1.2%)
3차 산업(생산+판매, 관광 등)	11.6 (10.1%)	13.3 (11.7%)	13.4 (12.0%)
총 농가수	**115 (100%)**	**114 (100%)**	**112(100%)**

○ 고품질의 국내 농수산물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 확보 및 영업활동 지원**이 수반될 필요

* 6차 산업화시 애로사항(복수응답, %) : (판로 개척) 67, (가공) 34, (재무·회계) 34 등

□ (개선방안) **가공·유통·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 제고

○ (가공) 식품 분말 등 **식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 시설 및 B2B(농가-식품기업) 판로지원 확대**('16년~, 농식품부)

* 현재 식품기업들은 재료공급의 안정성,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대부분 외국기업에서 소재를 납품받고 있는 실정

→ 대부분 농가가 B2C(농가-소비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음식제조업에 필요한 소재로 가공·판매시 고수익 가능

- 우수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외식업체에 홍보

- 임업회사-식품기업-농가가 공동 R&D 등을 통해 **프리미엄 임산물 가공식품 출시·지원**('16년~, 산림청)

* (예시) 임업회사(호두) + 식품기업 + 농가(우리밀) + 프랜차이즈 유통기업이 협업하여 '프리미엄 호두과자' 개발·유통

○ **(유통)** 농림어업계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16년~, 농식품부·해수부)

- **고급 농수산물 생산지***와 **수요기업의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고품질 원료 농수산물 공급

* (예시) 논산(딸기), 무안(양파), 제주(흑돼지), 완도(해삼·전복) 등

- **산지유통조직**(예: 영농법인)과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수요기업***이 **생산·유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매개

* 공영도매시장(32), 도매법인(83), 대형유통업체(2,464), 농식품관련기업(540) 등

○ **(마케팅) 공공조달, 방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판로확대**

-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대상에 **전통식품, 자연 휴양림*** 등 **추가** ('16.3/4, 조달청)

* (예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패키지상품 마련(자연휴양림 숙박·숲해설·체험, 교통 등)

- **농수산·중기전용 공영홈쇼핑**(아임쇼핑)에 유기농, 친환경수산물 등 **우수농수산물 입점 확대**('16.2/4, 농식품부·해수부)

* 소비자 선호 요일·시간대에 우수농수산물 전용 판매타임 지정·운영

- 영양전문가·스타쉐프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 제작** 추진('16년, 농식품부)

* (사례) 고창군은 '1박2일'팀의 방문 이후 방문객과 지역특산물 판매가 급증

2-3) 전통주 경쟁력 강화

□ **(현황)** 전통주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연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산업 규모가 작고 영세 업체가 다수**

* 주세법상 혜택을 받는 전통주(무형문화재, 식품명인주 등)는 주류 출고량의 0.3%, 전통주종인 탁·약주, 과실주 등은 12% 수준

□ **(개선방안)** 생산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마케팅 적극 지원**

○ **(시설 규제완화) 전통주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16.2/4, 농식품부·식약처)

* 전통주도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이 적용, 일부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완화 가능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강구**(시설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별도 시설기준 제정)

- 브랜디(예: 지역특산 과실주) 제조면허 발급조건인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기준 완화**(주세법시행령 개정, '16.4/4, 기재부)

* (현행)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25,000ℓ 이상 갖추어야 함(최소 2억원 소요)

○ **(유통 규제완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16.1월 시행, 조달청), **중기 전용 홈쇼핑** 등을 통해 **전통주를 온라인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통신판매고시개정, 16.3/4, 국세청)

* (현행) 전통주 온라인 판매는 농협, 농수산물 유통공사, 우체국 쇼핑몰, 제조사, 제조자 협회, 자치단체 홈페이지로 제한

- 실태조사(판매량 변화, 주요 고객층 등)를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전통주 판매 허용여부 및 범위 검토**

- 산업정보 제공 및 다양한 전통주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온라인 사이트 개설**('16.2/4, 농식품부)

○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문헌고증 연구 등을 통해 **입증된 유래·효능을 중심으로 홍보** 실시('16년~, 농식품부)

- 전국 전통주의 위치를 표시, 유래·효능에 관한 정보를 링크한 '(가칭) **팔도 전통주 지도' 제작**

* (예시: 한산 소곡주) '앉은뱅이 술' 이라고도 부르며, '술맛에 반해 과거를 놓친 선비 이야기' 등이 전해 내려옴

- 한류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적극 지원**

* (예시) 드라마 작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 소재로 전통주 활용

(3)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수출상품화

◇ 한국産 프리미엄을 활용하여 **유기농·고품질농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상품화**

3-1) 수출인프라 강화

□ **(현황)** 우리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한류 열풍,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

* 농수산식품 수출액(억불) : ('10) 59 → ('11) 77 → ('12) 80 → ('13) 79 → ('14) 83

○ 그러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통관·물류상의 장벽**으로 인해 FTA 등을 활용한 **시장 개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농산물은 중국 HACCP 취득이 필요하고, 수산물은 한-중 위생협정에 따른 별도의 위생요건(수출가공시설 등록) 필요

□ **(개선방안)** 한·중 FTA를 활용한 **신선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품목별 맞춤형 전략 수립**

○ **(투자촉진)**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16년~, 농식품부·해수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투기업·국내 생산기업간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등 매칭 추진

* (예시) 국내산 과일을 활용한 요구르트 개발 아이디어를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제공·협업하여 사업화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16.1월, 동반위에 기 건의, 농식품부)

○ **(물류)** 신선농수산물, 냉동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중국 내 콜드체인망 확충**('16년, 농식품부·해수부)

* 청도물류기지(1개소)와 공동물류센터(8개소)간 저온·냉동 유통망 구축

- **공동물류센터, 활어컨테이너** 등 수출물류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등을 통한 **현지물류망 확대**

○ **(인증 및 마케팅)** 수출 유망국의 HACCP · 유기농 등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인증절차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
('16년~, 농식품부 · 해수부 · KOTRA)

- 티몰(T-mall), 페이판(ffan)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O2O 시장 진출 확대*** 및 우수 쇼핑몰 **해외 현지법인 설립 지원**

* (예시) 수협중앙회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O2O시장 진출을 위해 페이판 내 "K-Fish 브랜드관" 운영 추진

- **특산품 생산지 지도를 작성**하여 중국 식품유통기업, 바이어 등에 **우수 원산지 정보를 제공**

○ **(품목별) 수출 유망 농수산식품**에 대한 **맞춤형 지원**
('16년~, 농식품부 · 해수부 · 식약처)

▶ **(쌀) 고품질 · 기능성 종자 개발 R&D 확충**

▶ **(김치)** 對중국 김치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

▶ **(우유) 해외인증 취득 지원**

* 현재 중국에 생우유 수출이 가능한 HACCP 취득 국내기업은 3개에 불과

▶ **(토마토)** 수출기업의 해외 판매망을 활용하여 **통합 브랜드화 추진 → 수출기업 外 일반농가 수출 촉진**

▶ **(김)** 조미김에 대한 **해외 위생 · 검역기준 완화** 협의,
프리미엄(예:초밥용) 김 종자 및 양식기술 개발 **R&D 강화**

▶ **(굴)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 굴스낵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 한국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K-Food Zone)** 설치 추진('17년~, aT)

▶ **한류 파급효과가 큰 지역**(예 : 상해 창닝지구)에 설치

▶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수출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험관 설치, 수출업체-바이어 연계, 본글로벌 농식품 벤처기업 현지설립 지원** 등 추진

▶ 식품, 문화, 콘텐츠, 패션 등 **한류 융복합 도모**

3-2)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역량 강화

□ **(현황)**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밭작물 기계화율***도 저조

* 농작물 기계화율은 98% 정도이나 밭작물 기계화율은 50% 수준

○ **원산지 표기 강화 등 소비자신뢰 제고**를 통해 생산·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

□ **(개선방안)** 전략적 R&D투자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유통 기반 확충** 및 **원산지 표시 확대**

○ **(전략적 R&D투자)** 농어업 분야 고부가가치 R&D 촉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강화

- **첨단 농어업·농식품 소재 분야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시행령 개정, '16.2/4, 기재부)

* (현행) 세액공제율 중소 30%, 대·중견기업 20% / 식품위해인자 저감 시스템, 기술융합 기반 기능성 식품, 스마트팜정밀환경제어기술 → (추가 예시) 스마트 양식, 농생명 바이오 소재 등

-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농어업 R&D 사업 중점 추진** ('16년~,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 농어업 R&D 분야(예시) >

▸ 유용식물의 항노화·건강기능 활성화 제품(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개발
▸ 농수산물 소재 생산기술(추출, 배합 등)
▸ 고부가가치 기능성 농수산물·식품 개발
▸ 스마트농업·양식기술 및 지능형 농기계 개발
▸ 친환경 어선·어구 개발, 어군탐지·혼획저감 기술 개발 등

○ **(인력 양성) 현장실습 및 창업 중심의 학교교육 강화**를 통한 청년 농어업인력 중점 양성

- **(농수산대학 개편)** 6차산업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행 학과체계*를 학부제로 개편**('16.4/4, 농식품부)

* (현행) 식량작물 · 시설원예 · 산림조경 · 수산양식학과 등 11개 학과

▪ **농수산가공과정을 신설**하고 **첨단 ICT 및 유통교육 대폭 보강**

- **(영농창업 지원) '창조농업선도고교'**(3개교)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을 선정**하여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 운영('16.3/4, 농식품부)

○ **(생산비용 경감) 수산 · 축산 · 임업용 국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16.2/4, 기재부)

<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예시) >

현 행	개 선
· **(원칙)** 해당 재산가액의 5%이상 · **(예외)** 경작용(1%), 주거용(2%), 행정목적 수행(2.5%) 등	· **(원칙)** 해당 재산가액의 **5%**이상 · **(예외추가)** 양식용 · 천일염제조용, 축사용, 산림식재용 등(2~3%)

○ **(원산지 표시 확대)**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 제공을 강화**

- **(한약제제)** 제약회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제제**(예:쌍화탕) 제조시,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권고**하고(의약품 안전규칙 개정, '16.2/4, 식약처),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

* 실태조사를 거쳐 원산지 표시 대상 한약재 결정(예: 인삼, 당귀, 황기 등)

** (현행) 약국,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의무 부과(의약품 안전규칙 제62조)

▪ **(한약)** 한의원, 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 · 판매**시,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부여** (관련지침 제정, '16.3/4, 복지부)

* (예시) 한의계 참여를 통한 원산지 우수표시업소 평가인증제도 신설 등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음식점에서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 '16.4/4, 해수부)

* (현행) 넙치, 참돔, 낙지 등 9종 + (추가) 오징어·꽃게·참조기('17.1월 시행) + 농어, 옥돔 등

** 판매량, 원산지 위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품목 및 업체 선정

○ **(밭농업 기반시설 확충)** 콩, 잡곡 등 **밭작물 생산의 규모화·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예 :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정비('16년~, 농식품부)

○ **(효과인증 지원)** 새로운 작물의 효과와 기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검증 강화**('16년~, 농촌진흥청)

→ 생산자·관련 업체에서 적극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사례) C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외국논문을 광고에 활용하였다가 과대광고로 지적

3-3) 유기농산물 활성화

□ **(현황)** 웰빙 열풍,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세 지속 전망**

* (국내) 생협 매출액(억원) : ('10) 5,391 → ('12) 7,282 → ('13) 8,740 → ('14) 9,781
(글로벌)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은 '13년 720억 달러로 '99년 대비 4.8배 증가

○ 다만, 취약한 생산기반*, 부실인증에 대한 벌칙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등으로 **최근 유기농 재배면적**** 감소

* 지역 분산형 소규모 생산구조로서 유기농업에 따른 생산비 부담 가중

** 유기농 재배면적(만ha) : ('11) 1.9 → ('12) 2.5 → ('13) 2.1 → ('14) 1.8

○ **시장에 유기농 프리미엄*은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으로 인한 **신뢰저하 문제 발생**

* 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평균 1.3 ~ 1.7배 높은 가격 형성

○ 유기농 신뢰체계 구축, 프리미엄 지급관행 확산 등 **유기농 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필요

<유기농 재배 선순환 구조>

□ **(개선방안)** 유기농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 인식 향상** 추진

○ **(생산)** 유기농 생산 촉진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규제완화** 추진

- 생산자 특성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기농 재배 매뉴얼 제작**('16년~, 농식품부)

- 국제기준(CODEX) 및 미국·EU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한 유기식품 관련 인증기준 개선**('17년, 친환경농업법 개정, 농식품부)

  * (예시) 토양 잔류농약 기준(한국 : 잔류농약 불검출 필요),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사용기준(한국 : 퇴비더미가 55~75℃를 15일 이상 유지, 5회 이상 뒤집기) 등

○ **(유통) 온·오프라인 판매망 개설, 유기농 농가 입점** 등 지원

- 유기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16.2/4, 농식품부)

  * 쇼핑몰 등록 컨설팅, 상세 홈페이지 제작, 소포장 기술 등 상품개발 지원 등

-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정적 상품공급을 위해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구축 등 **유통단계 간소화 추진**('17년~, 농식품부)

* 기존 산지유통조직은 시·군 단위로 활동하는 반면,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물량이 적어 광역단위의 유통조직 구축 필요(현행 4단계 유통 구조를 2단계로 축소 가능)

○ **(소비자 인식 제고)** 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우수농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기농 명인 선발 → 유기농 확산 인력으로 활용**('17년, 농식품부)

* 우수농가 재배기술·성공비결을 책자로 발간·전파하고,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친환경 교육시 명인을 강사로 채용

- 유기식품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예능 프로그램*에 **유기식품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방영** 등 소비자 관심 유발('16년, 농식품부)

* (예시) TV 예능 프로그램에 유기농 재배지역 투어 실시 등

- 유기농 인정요건(농약·화학비료 미사용) 등 **친환경농법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16년, 농식품부)

* 친환경 분야 자조금 제도(농업인 스스로 일정금액을 납부→농산물 소비촉진, 판로확대 등을 위해 자체 사용) 신설시 정부매칭 지원 추진

- **부정행위자 처벌***, 유기농 인증 후 **교육·컨설팅 등 사후관리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16.3/4, 농식품부)

* 부실 인증기관 임원의 타 인증기관 참여제한 신설(3년), 인증심사원 자격취소시 재취득 제한기간 확대(2→3년), 보수교육 신설(6시간) 등

(4) 인력유입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력 제고

◇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초기 애로를 해소**하고, 귀농귀촌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4-1) 주택 및 농지 취득 지원

□ **(현황)** 도시 일자리 기회 감소, 인구 고령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의욕 등으로 **귀농어·귀촌 인구가 빠르게 증가**

* 귀농귀촌 가구수(만호) : ('10) 0.4 → ('11) 1.1 → ('12) 2.7 → ('13) 3.2 → ('14) 4.5

○ 그러나 **주택·농지구입 곤란, 영농기술 습득 애로, 생활여건 불편** 등으로 안정적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

* 평균소득('14년) : (귀농인) 1,688만원, (도시근로자) 5,214만원 (농가) 3,495만원

□ **(개선방안)** 농어촌 주택 및 농지취득 지원 등 **초기 귀농여건 개선**

○ **(빈집 거래 활성화)** 귀농귀촌종합센터 內 빈집정보 제공 기능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확대·개편**('16년, 농식품부)

* (현행) 날짜별로 단순 텍스트 배열 → (개선) 지도 검색 시스템 구현, 항공사진 제공, 해당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연계 등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홍보 강화**

* (On-line) 관계기관 홈페이지 내 하이퍼링크 기능 설치, 포털사이트 홍보 등
(Off-line) 팜플렛 제작 → 주민자치센터, 농협, 연암대학 등 배포

- 종합포털을 통해 빈집을 임차(매입)할 경우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빈집거래의 선순환 구조 형성 ('16년,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 거래의 선순환 구조>

① 빈집 리모델링 예산과 연계하여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② 빈집 수요 증가 → ③ 매매·임대 거래 활성화 → ④ 빈집 공급 확대

○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완화)**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주택 구매부담 완화**

- 도시민의 귀농부담 완화를 위해 **귀농주택 구매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1가구1주택 적용) **요건** 중 **농지 사전소유 규제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6.4/4, 기재부)

* (현행) 농지 사전소유(1,000m^2 이상) 필요 → (개선) 귀농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예:1년) 내에 1,000m^2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양도세 면제

< 귀농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

요 건	현 행	개 정
지 역	읍·면 지역에 소재 (수도권 제외)	동 일
	연고지에 소재 (최초 등록지 or 5년이상 거주한 지역)	**연고지요건 삭제 + 5년내 종전주택 매각요건 신설** ('16.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 旣반영)
가 액	취득가격 9억원 이하	동 일
면 적	대지면적 660m^2 이내	동 일
농 지	**1,000m^2 이상 농지 소유** +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 취득	**귀농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예:1년)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인정**
세 대	세대전원 이사 (취학, 근무, 질병 등은 예외)	동 일
기 간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동 일
적 용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적용	동 일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액**(2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은 취득**에 따른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요건**(1가구 1주택 적용)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6.4/4, 기재부)

▪ **건물연면적 요건(150m^2) 폐지**(취득가액, 대지면적 요건은 유지)

<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

요 건	현 행	개 정
지 역	읍·면 지역에 소재	동 일
가 액	취득가액 2억원 이하	동 일
면 적	대지면적 660m^2 이내,	동 일
	건물연면적 150m^2 이내 (공동주택은 전용 116m^2)	**삭 제**
기 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동 일
행정구역	동일·연접지역 아닐 것	동 일
적 용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에만 적용(1회)	동 일

○ **(단지형 단독주택 공급)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단독주택단지 건설 추진**('16년~, LH)

*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

- 별도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금융기법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되, 단독주택 분양 및 임대 방식 병행

* LH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에 출자 + 민간자금 유치

- 귀농·귀촌인 수요조사 및 사업모델 구상('16.2/4) → 시범사업 실시('16.4/4)

○ **(농지은행제 개선)**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매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농지 중 **밭(田)비중** 확대('16년~, 농어촌공사)

* '16년부터 신규 취·창농인을 위한 맞춤형 농지 임대사업 실시

** 농지은행의 농지보유 현황('15년말, %) : 논(77.4), 밭(17.1), 과수원(5.5)

-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농지은행제도 집중 홍보

4-2) 귀농귀촌 인프라 및 교육지원 강화

□ **(현황) 영농경험 부족 등**으로 안정적 소득확보가 어렵고, **농어촌 생활 부적응**에 따라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

* 귀농귀촌 실패요인 조사('14년) : 농촌생활 적응 어려움(38%), 낮은 소득(24%) 순

□ **(개선방안)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실패 위험을 최소화

① 인프라 확대

□ **도시거주 농업인에 대한 귀농 지원**

○ **도시거주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인 등록 2년 이내**인 경우 농어촌 이주시 **귀농지원사업** 대상에 포함('16.1/4, 농식품부)

* 도시에 거주하면서 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작

** 정착자금 지원,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귀농 컨설팅 지원 등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기능 중심의 **수요자 친화형으로 개편**('16.2/4, 농식품부)

○ 귀농귀촌 (예비)인력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

* (현행) 정부 지원정책, 교육, 빈집정보 → (추가) 귀농인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멘토) Pool 등

□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및 농업경영 지원을 위한 **제1차 「귀농어·귀촌 종합계획*」 수립** ('16. 4/4, 농식품부·해수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 수립 의무 부과

② 교육 지원 강화

□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확충('16.3/4,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 개설

* 관심분야 멘토 지정, 체계적인 영농 교육, 마을 문화 적응하기 등 농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교육 진행

□ 지역단위의 **우수멘토 풀*을 대폭 확충**하고 **DB화 추진**('16.4/4, 농식품문화정보원)

* 충분한 멘토링 제공을 위해 약 2,500명이 필요하나 현재 600여명만 등록

○ **멘토링 DB 구축과 귀농귀촌 정책지원을 연계**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 **우수사례를 발굴·지속 홍보**하고, **우수 멘토**는 산학겸임교사* 임명,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사례)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에서는 우수 귀농인을 현장지도교수로 임명하여 신규 귀농귀촌자에게 교육, 상담 등을 진행

4-3)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 **(현황)** 학령인구 감소, 도시화 등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교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이 미흡**

* 전국적으로 3,627개 학교가 폐교('82년~'15.6월) → 매각(62.7%), 임대(20.4%), 시도교육청 자체활용(5.7%), 미활용(11.2%)

○ **폐교재산 임대·매각용도가 한정***되어 귀농·귀촌센터, 농어촌 숙박시설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제약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소득증대(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용도로 한정

□ **(개선방안)**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적극 활용 (폐교활용법 개정, '16.3/4, 교육부)

○ 농어촌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의 **활용 촉진**

* 학교 개교시에는 국고·지방비 지원, 지역주민 기부 등으로 부지를 확보했으나, 폐교 이후에는 교육당국(지방교육청)이 잔여재산 소유권자로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

- **교육청·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 무상임대 허용**

* (현행) ① 폐교 후 5년 이상 미활용 & ②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 하였으나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임대 가능

- 폐교의 **활용 용도**에 **귀농어귀촌센터, 캠핑장** 등 추가

○ 귀촌 수요 등에 대비하여 매각보다는 **임대 위주로 운영**(교육청)

○ 교육부(교육청), 농식품부 및 행자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폐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 폐교 활용 사례 : 고창군 귀농귀촌학교 >

▸ '07년 고창군청에서 폐교부지 13,000평 매입
▸ '13년 리모델링하여 이론·실습을 겸한 귀농귀촌 전문교육장으로 활용 (회의실, 숙박시설 등 보유)
※ 고창군 전체 인구의 12%가 귀농귀촌인구로 전국 최고 수준

4-4) 어업진입 장벽 해소

□ (현황) 어업경영을 위해 **어선 취득, 어촌계 가입** 등이 필요하나, **어선거래 공개시장 부재, 어촌계의 폐쇄성** 등 **진입장벽 존재**

○ 어선거래가 대부분 미신고 중개인에 의해 **음성적으로 거래*** 되어 어업 **신규진입이 어렵고 피해사례가 빈발****

* 어선거래 시장규모('13년) : 2,900여건, 4,000~6,000억원 규모로 추정
** 과도한 어업허가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요구, 어업허가증 위조 등

○ 어촌계가 보유한 허가권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배타적·영속적으로 이용**되어 **신규인력의 진입이 제한**

□ (개선방안) **어선 공개시장 조성**을 통해 어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어촌계 설립요건 완화** 등을 통한 **신규 어업인력 유입** 촉진

○ **(어선거래 활성화)** 웹 기반의 **어선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선거래 희망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터 제공('16.4/4, 선박안전기술공단)

- 어선 매물현황, 중개업자 정보 제공 등 **시범사업**을 거쳐 **어업기자재 관련 제조·수리 부문까지 시스템 확대**

* 정보시스템 구축완료('16.9월) → 시범사업('16.10~12월) → 시스템 본격오픈('17.1월)

▪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되 **초기정착단계**(~'19년)**에서는 어선거래 수수료 감면** 추진

- 전자어업허가증 발급(~'16.6월)과 연계하여 **소형어선은 선박증서 비치의무 면제**(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16.4/4, 해수부)

* (현행) 톤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선실 내 선적증서 원본 비치 필요

○ **(공동체어업 진입제한 완화)** 어촌계 내 귀어인력 비중을 정책지원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어촌계의 자발적인 귀어인력 흡수** 유도

- 어업활동과 어촌공동체 유지 등을 위한 **어촌계 설립요건 완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6.3/4, 해수부)

* (현행) 어촌계 설립을 위해 수협조합원 10명 필요 → (개선) 5명으로 완화

-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별 가입조건'을 파악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제공('16.2/4, 해수부)

* 어촌계 현황조사 및 귀어귀촌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15.4~11월) 활용

4 새만금 활성화 방안

◇ 새만금 사업은 '10.4월 방조제 준공 후, **새만금개발청을 설립**('13.9)하여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전방위로 추진 중**

○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중국 내수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유치 성과*** 달성

* 특히, 日도레이첨단소재, 벨기에 솔베이실리카, 中CNPV, 美 대체천연가스 기업 등 양질의 기업유치

○ 다만, 차별화된 인센티브·규제특례 부족, 높은 조성원가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91㎢ 개발계획 중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등 일부(58㎢)만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 등은 사업자 선정실패로 개발 미착수

◇ **對중국 소비시장 인접성** 등 **새만금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의 새만금사업 활성화방안** 모색 필요

*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15.10월) 등 새만금이 對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 형성 중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❶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 확대를 위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❷ 새만금 내 미개발구역 용지조성 촉진을 위해 개발 투자여건 개선

❸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규제완화 제기사항은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 도입

❹ 인.허가 원스톱처리 지원 및 행정구역 조기 확정을 통해 새만금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

(1)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현황) 현행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은 미흡***

* 최근 새만금특별법 개정('15.8)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업체까지 자금 및 입지지원(임대료 감면은 제외하고 장기임대만 허용) 확대 적용

○ **국내기업의 경우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은 선별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

□ (개선방안)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입지지원) 새만금 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 허용(새만금특별법 개정, '16.4/4, 국토부)

○ (자금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 포함**(지자체 재정자금지원기준 개정, '16.12월, 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은 일반지역 대비 설비투자보조율 최대 10%p 가산 등 혜택 부여

○ (세제지원)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과 연계**하여 감면 검토('16.6월, 기재부)

(2)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현황) 새만금의 경우 수심이 깊어 **대규모 매립이 필요**함에 따라 **투자 리스크·조성원가**가 높아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

○ 새만금 내 국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부재***

* 기업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

○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 매립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에 대해 **1년 이내에 매수를 청구**(감정가의 75%)해야 함에 따라 **자금부담 가중**

* **총사업비정산제**: 매립준공 시점에서 전체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매립을 위해 투입한 '총사업비' 비교 → 사업시행자에게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 **(개선방안)**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 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세제지원)**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6.12월, 기재부)

○ **(매립지 임대 특례)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 허용(새만금특별법 개정, '16.4/4, 국토부)

-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감정가의 75%)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 → 최대 100년)

(3) '새만금 규제프리존' 조성

3-1) 새만금 지역 내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완화

□ **(현황)** 열악한 입지여건 및 신규 조성된 토지 특성을 감안한 규제완화 수요는 높으나, **제주도 등에 비해 도시·건축분야 특례 미흡**

□ **(개선방안)**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관한 폭넓은 특례** 부여(새만금특별법 개정, '16.4/4, 국토부)

○ **새만금내**에서는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

3-2) 지속적 규제개선 프로세스 추진

□ (현황)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용·출입국 등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에는 여전히 **한계**

* 고용·출입국·통관·입지 등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15.3월, 제7차 무투회의)

□ (개선방안)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도입

○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및 새만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 규제개선 추진**('16.3월, 국조실)

<참고> 새만금 내 규제개선 촉진 프로세스(안)

㉮ **기업이 새만금청에 대해** 새만금 지역 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면, 새만금청은 **기업의 진입 장벽 및 활동제약**으로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국조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규제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부처 간 의견 확인 및 조정**

㉰ **국조실**은 **규제개선 논의결과를 새만금위원회**에 **보고**

- 소관 부처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새만금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존치 필요성을 입증

㉱ **부처 간 논란과 이견이 지속되는 규제개선 과제는 그 이유와 위원회 심사결과를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여 처리방향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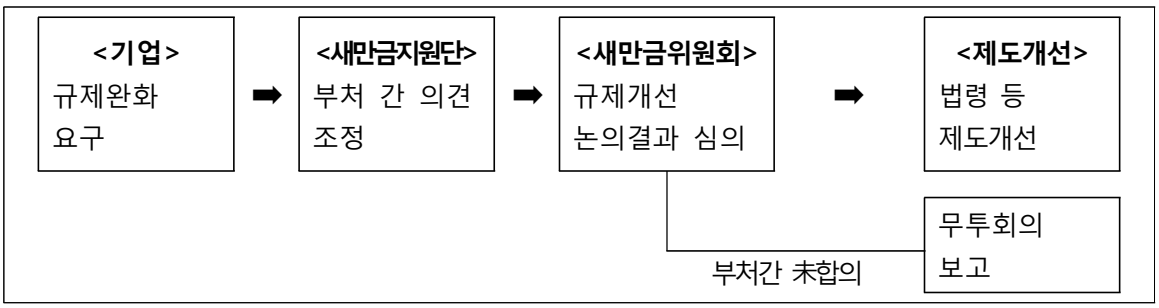

(4)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4-1) 인허가절차 One-stop 처리 지원

□ (현황) 기업투자를 위한 **각종 인·허가는 여러 기관과 개별적으로 복잡한 협의**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신속한 투자유치에 애로

* 예) 건축허가(새만금청), 소방시설(소방서), 전기공사(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관련(가스안전공사), 폐기물(군산시), 환경관련(환경청) 등

□ (개선방안)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 지원** ('16.6월, 새만금청)

○ 또한, 새만금청에 **인·허가 절차의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관** 지정

4-2)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기 확정

□ (현황) 새만금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등기 절차가 지연**되어 입주업체의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

* 일부 입주기업은 네비게이션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기초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애로도 호소

□ (개선방안) **인근 시·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하여 기업 애로 해소('16.6월, 행자부)

* 행자부에서 지자체 신청을 통해 이견이 낮은 지역부터 행정구역 부여

4-3) 새만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새만금청 역할 강화

□ (현황) **새만금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준공 후 지자체(전북도)가 **관리***함에 따라 새만금 **투자유치 관리체계 분산**

*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및 공장배치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승인 등 권한을 행사

□ (개선방안) 새만금지역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새만금특별법 개정, '16.4/4, 국토부)

Ⅳ.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1-1.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기재부, 미래부,중기청 등	'16.10월
1-2. K-컬쳐밸리 조성 지원	행자부, 문체부	'16.2/4
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지원	국토부,농식품부	'16.4/4
1-4. 의왕산업단지 조성 지원	국토부,의왕시	'16.8월
1-5. 태안 기업도시 투자애로 해소	문체부,국토부	'16.12월
1-6.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농식품부	'16.10월
2.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2-1. 스포츠산업 활성화		
2-1-1. 스포츠시설 확충		
2-1-1-1.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국토부	'16.2/4
2-1-1-2.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기재부	'16.4/4
2-1-1-3. 국가하천내 체육시설 확충	국토부,해수부	'16.2/4
2-1-1-4. 공공체육시설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	'16.4/4
2-1-2. 스포츠산업 육성		
2-1-2-1. 스포츠 시설업		
2-1-2-1-1. 골프장 제도 개선		
2-1-2-1-1-1.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	문체부	'16.2/4
2-1-2-1-1-2. 전환시 회원동의 요건 완화	문체부	'16.2/4
2-1-2-1-1-3. 특별 융자 프로그램 마련	문체부	'16.2/4
2-1-2-2. 캠핑 등 규제 개선		
2-1-2-2-1.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신설	국토부	'16.1/4
2-1-2-2-2. 농지전용 면적 확대	농식품부	'16.3/4
2-1-2-2-3. 국유림 산림사업 범위에 야영장 추가	산림청	'16.4/4
2-1-2-2-4. 산림레포츠 시설종류 확대	산림청	'16.2/4
2-1-2-3. 스포츠 용품업		
2-1-2-3-1. 기금 융자금리 인하 및 무형자산 가치평가 도입	문체부	'16.2/4
2-1-2-3-2. 유망 스포츠용품기업 지원	문체부,산업부, 중기청	'16.2/4
2-1-2-3-3. 자전거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	행자부,경찰청	'16.4/4
2-1-2-4. 스포츠 서비스업		
2-1-2-4-1. 동아시아 프로스포츠 교류 활성화	문체부	'17.4/4
2-1-2-4-2. 스포츠 에이전트 운영지침 및 육성 프로그램 마련	문체부	'16.4/4
2-1-2-4-3. 프로야구 에이전트 규제 개선	문체부	'16.4/4
2-1-2-4-4. 매니지먼트 회사(한국판 IMG社) 육성	문체부	'16.3/4
2-1-3. 스포츠 저변 확대		
2-1-3-1. 학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문체부	'16.2/4
2-1-3-2. 종합형스포츠클럽의 자립 경영 지원	문체부	'16.2/4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2-2. 공유경제 활성화		
2-1-1. 숙박공유		
2-1-1-1. '(가칭)공유 민박업' 신설(규제프리존)	문체부	'16.2/4
2-1-1-2. 공유민박업 전국 확대 추진	문체부	'17.6월
2-1-2. 차량공유(카셰어링)		
3-1-2-1. 면허정보 제공범위 확대 및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3-1-2-1-1. 면허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국토부·경찰청	'16.3/4
3-1-2-1-2. 서버 확대 및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국토부·경찰청	'16.2/4
3-1-2-2. 예약소(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3-1-2-2-1-1. 유권해석을 통해 공영주차장 제공 허용	국토부	16.1/4
3-1-2-2-1-2. 부설주차장 관련 제도개선	국토부	'16.7월
3-1-2-2-1-3. 노상주차장 관련 제도개선	국토부	'16.7월
3-1-2-2-2. 예약소 신고서류 재정비	국토부	'16.7월
3-1-2-3. 차량공유 시범도시 지정 등 도입 촉진		
3-1-2-3-1. 차량공유 시범도시 지정	국토부	'16.4월
3-1-2-3-2. 임대주택에 차량공유 도입 확대	국토부	'16.4/4
2-3.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2-3-1. 新서비스시장 창출		
2-3-1-1.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복지부	'16.3/4
2-3-1-2.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복지부	'16.2/4
2-3-2. 新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2-3-2-1.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복지부	'16.2/4
2-3-2-2.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합리적 약가기준 마련		
2-3-2-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기준 마련	복지부	'16.1/4
2-3-2-2-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복지부	'16.10월
2-3-2-3.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생산시설 입주 허용 (첨복단지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16.7월
2-3-2-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조특법 개정)	기재부	'16.4/4
2-3-2-5.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관련, 제품별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16.10월
2-3-3.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금융위	'16.2/4
2-4.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		
2-4-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지원		
2-4-1-1. 국내대학 학점 이수 요건완화	교육부	'16.8월
2-4-1-2.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외 우수사례 배포	교육부	'16.8월
2-4-2. 해외캠퍼스 설립기준 마련		
2-4-2-1. 대학 위치변경 인가범위 확대	교육부	'16.8월
2-4-2-2. 사전컨설팅 폐지	교육부	'16.8월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3.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3-1. 민간투자 활성화		
3-1-1. 농업 특화단지 조성		
3-1-1-1. 농업특화단지 조성	농식품부	'16년~
3-1-1-2. R&D · 판로개척 등 인프라 구축	농식품부	'16년 ~
3-1-1-3. 농지활용 · 경영활동 규제 완화	농식품부, 공정위	'16.2/4
3-1-2. 양식업 선진화		
3-1-2-1. 양식업 대규모 자본진입 허용	해수부	'16.4/4
3-1-2-2. 친환경양식단지 조성	해수부	'16년 ~
3-1-2-3. 외해양식단지 조성 및 규제완화	해수부	'16.2/4
3-1-3. 산지의 효율적 활용		
3-1-3-1.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산림청	'16.2/4
3-1-3-2. 국유림 특정용도 사용허가 기준 완화	산림청	'16.2/4
3-1-3-3. 식물활용 6차산업 복합단지 등 조성	산림청 · 강원도	'17년~
3-1-3-4. 공유림 세부경영기준 마련	산림청	'16.2/4
3-1-3-5. 임목보험 도입	산림청	'17년
3-1-3-6. 산지은행 도입 검토	산림청	'16년 ~
3-1-3-7. 산림펀드 활성화	산림청	'16년~
3-1-4. 농수산벤처 활성화		
3-1-4-1. 농수산벤처 창업 컨설팅	농식품부	'16년
3-1-4-2. 농수산벤처투자 확대	농식품부	'16년 ~
3-2. 6차산업화		
3-2-1. 농어촌 관광 활성화		
3-2-1-1. 농촌융복합 시설제도 도입 및 규제완화	농식품부,산림청	'16.4/4
3-2-1-2. 농어촌민박 석식제공 허용	농식품부	'16.4/4
3-2-1-3. 실제 어촌지역 농어촌민박 지정 확대	해수부	'17년
3-2-1-4. 농장방문객 주차편의시설 확충	농식품부	'16.1/4
3-2-1-5. 어항시설 일부구역 민간투자자 매각허용	해수부	'17년
3-2-1-6. 수상레스토랑, 상업시설 조성 추진	해수부	'16년 ~
3-2-2. 가공 · 판매역량 강화		
3-2-2-1. 식품소재산업 육성 및 B2B판로 지원	농식품부	'16년~
3-2-2-2. 프리미엄 임산물 가공식품 출시지원	산림청	'16년 ~
3-2-2-3. 계약재배 등 상생협력 모델 발굴	농식품부·해수부	'16년~
3-2-2-4. 나라장터에 전통식품 등 추가	조달청	'16.3/4
3-2-2-5. 공영홈쇼핑 우수농수산물 입점확대	농식품부·해수부	'16.2/4
3-2-2-6. 지역특산물 홍보 프로그램 제작	농식품부	'16년
3-2-3. 전통주 경쟁력 강화		
3-2-3-1. 전통주 시설규제 완화	농식품부,식약처	'16.2/4~
3-2-3-2. 브랜디 제조시설 기준 완화	기재부	'16.4/4
3-2-3-3. 전통주 온라인 구매 확대	국세청	'16.3/4
3-2-3-4. 전통주 통합온라인 사이트 개설	농식품부	'16.2/4
3-2-3-5.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농식품부	'16년~
3-3. 유기농 · 고품질 농수산물의 수출상품화		
3-3-1. 수출인프라 강화		
3-3-1-1.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투자유치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16년~
3-3-1-2. 중국 내 콜드체인망 확충	농식품부·해수부	'16년
3-3-1-3. 수출인증 및 마케팅지원 강화	농식품부·해수부	'16년 ~
3-3-1-4. 수출유망 품목별 맞춤형 지원	농식품·해수부 등	'16년 ~
3-3-1-5.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aT	'17년 ~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3-3-2.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역량 강화		
3-3-2-1. 신성장동력 R&D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재부	'16.2/4
3-3-2-2. 유망분야 농어업 R&D 사업 강화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16년~
3-3-2-3. 농수산대학 개편	농식품부	'16.4/4
3-3-2-4.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 운영	농식품부	'16.3/4
3-3-2-5. 수산·축산·임업용 국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기재부	'16.2/4
3-3-2-6. 한약제제 원산지 표시 강화	식약처	'16.2/4
3-3-2-7. 한약재 원산지 표시 강화	복지부	'16.3/4
3-3-2-8. 원산지 표기 의무 수산물 확대	해수부	'16.4/4
3-3-2-9. 밭농업 기반 시설 확충	농식품부	'16년~
3-3-2-10. 효과인증 지원 강화	농진청	'16년~
3-3-3. 유기농산물 활성화		
3-3-3-1. 유기농 재배 매뉴얼 제작	농식품부	'16년~
3-3-3-2. 유기식품 인증기준 제도개선	농식품부	'17년
3-3-3-3. 유기농전문 유통망 확충	농식품부	'17년~
3-3-3-4. 유기농제품 소비자 인식 제고	농식품부	'16년~
3-4.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력 제고		
3-4-1. 주택 및 농지취득 지원		
3-4-1-1. 귀농귀촌센터 정보제공 강화	농식품부	'16년
3-4-1-2. 귀농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	기재부	'16.4/4
3-4-1-3. 소액농어촌 주택 건물연면적 요건 폐지	기재부	'16.4/4
3-4-1-4. 단지형 귀농귀촌 주택 공급	LH	'16년~
3-4-1-5. 농지은행제 개선	농어촌공사	'16년~
3-4-2. 귀농·귀촌 인프라 및 교육지원 강화		
3-4-2-1. 귀농귀촌 사업 지원대상 확대	농식품부	'16.1/4
3-4-2-2. 수요자친화형 홈페이지 개편	농식품부	'16.2/4
3-4-2-3. 귀농어귀촌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부·해수부	'16.4/4
3-4-2-4. 귀농어 귀촌 교육지원 강화	농식품부·해수부	'16년
3-4-3.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3-4-3-1. 폐교부지 활용 강화	교육부	'16.3/4
3-4-4. 어업진입장벽 해소		
3-4-4-1. 어선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해수부	'16.4/4
3-4-4-2. 소형선박 선박증서 비치의무 면제	해수부	'16.4/4
3-4-4-3. 어촌계 설립요건 완화	해수부	'16.3/4
4. 새만금 활성화 방안		
4-1. 국내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		
4-1-1.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 허용	국토부	'16.4/4
4-1-2. 지원우대지역에 포함	산업부	'16.12월
4-1-3. 규제프리존내 세제지원방안 연계	기재부	'16.6월
4-2. 사업시행자 인센티브 부여		
4-2-1.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재부	'16.12월
4-2-2. 잔여매립지 장기임대 허용 등	국토부	'16.4/4
4-3. 규제청정 시범지역화		
4-3-1. 입지규제 추가 완화	국토부	'16.4/4
4-3-2. 지속적 규제개선 프로세스 추진	국조실	'16.3월
4-4.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4-4-1. 인허가절차 One-stop처리 지원	새만금청	'16.6월
4-4-2. 행정구역 조기 확정	행자부	'16.6월
4-4-3. 새만금 산단 관리에 대한 새만금청 역할 강화	국토부	'16.4/4